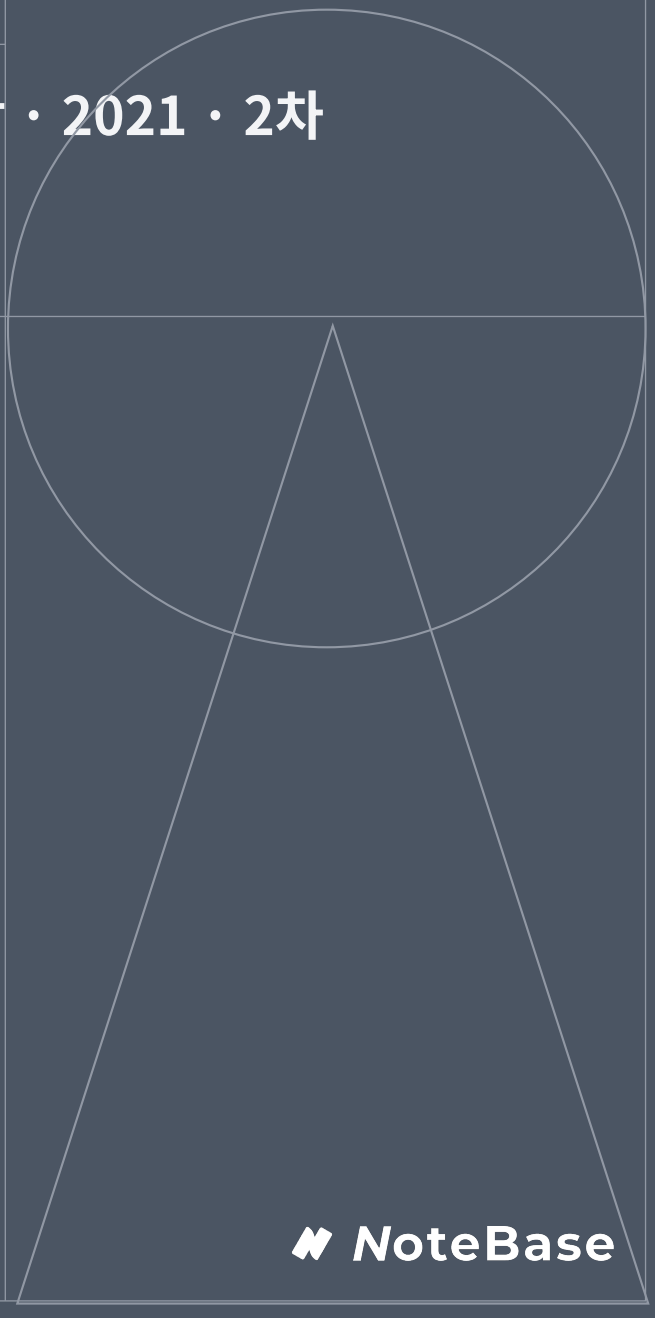
기출OX 해설집

공무원/국가직/7급 · 회계학 · 2021 · 2차



NoteBase

기출OX 해설집

공무원/국가직/7급 · 회계학 · 2021 · 2차

공무원/국가직/7급 · 회계학 · 2021 · 2차

문 1. 일반목적재무보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많은 현재 및 잠재적 투자자, 대여자 및 그 밖의 채권자는 정보를 제공하도록 보고기업에 직접 요구할 수 없다.

② 일반목적재무보고서는 현재 및 잠재적 투자자, 대여자와 그 밖의 채권자가 필요로 하는 모든 정보를 제공한다.

③ 일반목적재무보고서는 보고기업의 가치를 보여주기 위해 고안된 것이 아니다.

④ 경영진은 필요로 하는 재무정보를 내부에서 구할 수 있기 때문에 일반목적재무보고서에 의존할 필요가 없다.

정답 2번

출제 포인트

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 중 '일반목적재무보고의 목적' 부분의 핵심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는지를 묻는다. 일반목적재무보고서가 제공하는 정보의 범위와 한계, 그리고 정보이용자의 성격을 구분할 수 있어야 한다.

핵심 개념

일반목적재무보고서의 주 이용자는 현재 및 잠재적 투자자, 대여자, 그 밖의 채권자이며 이들 대부분은 보고기업에 정보를 직접 요구할 권한이 없어 일반목적재무보고서에 의존한다. 다만 개념체계는 이 보고서가 이용자가 필요로 하는 모든 정보를 제공하지는 못하며, 이용자는 일반경제상황이나 산업전망 등 다른 원천의 정보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명시한다. 또한 일반목적재무보고서는 보고기업의 가치를 보여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자원과 청구권, 그 변동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며, 경영진은 필요한 재무정보를 기업 내부에서 얻을 수 있으므로 일반목적재무보고서에 의존할 필요가 없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옳은 설명이다. 대부분의 현재 및 잠재적 투자자, 대여자, 그 밖의 채권자는 보고기업에 자신들이 필요로 하는 정보를 직접 제공하도록 요구할 수 없어 일반목적재무보고서와 같은 외부 정보 원천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② 틀린 설명이다. 이 문항의 정답이다. 개념체계는 일반목적재무보고서가 이용자들이 필요로 하는 모든 정보를 제공하지 않으며 제공할 수도 없다고 명시한다. 틀린 표현 '모든 정보를 제공한다' → 올바른 표현 '이용자가 필요로 하는 정보의 일부만 제공하며, 이용자는 다른 원천의 정보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
③ 옳은 설명이다. 일반목적재무보고서는 보고기업의 가치를 보여주기 위해 고안된 것이 아니라 보고기업의 경제적자원과 청구권 및 그 변동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고안된 것이다.
④ 옳은 설명이다. 경영진은 필요로 하는 재무정보를 기업 내부에서 구할 수 있으므로 일반목적재무보고서에 의존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 개념체계의 설명과 일치한다.

오답 포인트

'모든 정보를 제공한다'거나 '완전한 정보를 준다'는 식의 절대적·포괄적 표현이 선지에 나오면 개념체계의 취지와 어긋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의심해야 한다. 일반목적재무보고서는 이용자가 필요로 하는 정보의 상당 부분을 제공하지만 전부를 제공하지는 못하며, 이 한계를 인식하는 것이 개념체계 학습의 출발점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선지에 '모든', '전부', '완전히' 같은 단정적 표현이 있으면 우선적으로 의심하고, 개념체계가 명시한 한계(정보 제공의 불완전성, 보고기업 가치 반영 목적 아님, 경영진 비의존)와 대조해 옳고 그름을 가린다.

암기 포인트

일반목적재무보고서는 정보이용자가 필요로 하는 정보의 '전부'가 아니라 '일부'만 제공하며, 보고기업의 가치가 아니라 경제적자원·청구권·그 변동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고, 경영진은 이 보고서에 의존할 필요가 없다는 세 가지 명제를 세트로 기억해 둔다.

NoteBase

문 2. (주)한국은 20×1년 1월 1일부터 적격자산인 공장건물을 신축하기 시작하였으며, 20×2년 10월 31일 완공하였다. 공사대금 지출 및 신축공사와 관련되는 차입금의 자료는 다음과 같다.

(주)한국이 20×1년 공장건물 신축과 관련하여 자본화한 차입원가는? (단, 이자비용은 월할 계산한다)

구분	지출일 · 차입일	금액	상환일	연 이자율
공사대금 지출액	20×1년 1월 1일	₩100,000	–	–
특정목적 차입금	20×1년 1월 1일	₩80,000	20×1년 12월 31일	5%
일반목적 차입금	20×1년 1월 1일	₩200,000	20×2년 12월 31일	10%

① ₩4,000

② ₩6,000

③ ₩20,000

④ ₩24,000

정답 2번

출제 포인트

적격자산 신축과 관련된 차입원가 자본화 문제이다. 특정차입금 이자는 전액 자본화하고, 특정차입금으로 충당하고 남은 지출액에 대해서만 일반차입금의 자본화이자율을 적용하여 자본화액을 계산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조건 정리

공사대금 지출액은 20×1년 1월 1일에 ₩100,000이 전액 지출되었다. 특정목적 차입금은 20×1년 1월 1일에 ₩80,000을 연 5%로 차입하여 20×1년 12월 31일에 상환하였으므로 20×1년 중 12개월 전부 사용되었다. 일반목적 차입금은 20×1년 1월 1일에 ₩200,000을 연 10%로 차입하여 20×2년 12월 31일에 상환하였으므로 역시 20×1년 중 12개월 전부 사용되었다. 이자비용은 월할로 계산한다.

NoteBase

사용할 공식

특정차입금 자본화 차입원가 = 특정차입금 × 이자율 × 자본화기간(월수/12). 일반차입금 자본화 차입원가 = (연평균 지출액 중 특정차입금 미충당분, 일반차입금 실제 이자비용), 이때 자본화이자율은 일반차입금 이자비용 합계를 일반차입금 연평균 차입금액으로 나눈 값이다.

계산 과정

1) 특정차입금 자본화액: 특정목적 차입금 ₩80,000은 20×1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2개월간 전액 공사에 사용되었으므로 자본화 차입원가는 $80{,}000 \times 5\% \times \frac{12}{12} = 4{,}000$원이다.
2) 연평균 지출액 중 특정차입금 미충당분: 20×1년 연평균 지출액은 $100{,}000 \times \frac{12}{12} = 100{,}000$원이며, 이 중 특정차입금 ₩80,000으로 직접 충당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100{,}000 - 80{,}000 = 20{,}000$원이 일반차입금 자본화 대상 연평균 지출액이 된다.
3) 일반차입금 자본화이자율: 일반목적 차입금 ₩200,000의 연 이자비용은 $200{,}000 \times 10\% = 20{,}000$원이며, 자본화이자율은 $\frac{20{,}000}{200{,}000} = 10\%$이다.
4) 일반차입금 자본화액: 연평균 지출액 미충당분 20,000원에 자본화이자율 10%를 곱하면 $20{,}000 \times 10\% = 2{,}000$원이며, 이는 일반차입금 실제 이자비용 20,000원을 초과하지 않으므로 전액 자본화한다.
5) 20×1년 총 자본화 차입원가: 특정차입금분 4,000원과 일반차입금분 2,000원을 더하면 $4{,}000 + 2{,}000 = 6{,}000$원이다.

선지 판단

① ₩4,000 → X. 특정차입금 자본화액만 반영하고 일반차입금 자본화액 2,000원을 누락한 금액이다.
② ₩6,000 → O. 특정차입금 자본화액 4,000원과 일반차입금 자본화액 2,000원을 합산한 20×1년 총 자본화 차입원가이다.
③ ₩20,000 → X. 일반목적 차입금의 실제 이자비용 전액(연평균 지출액 미충당분에 자본화이자율을 곱하지 않고 이자비용 전액)을 그대로 자본화한 금액으로, 특정차입금으로 이미 충당된 지출액을 다시 일반차입금 대상에 포함시키는 오류이다.
④ ₩24,000 → X. 특정차입금 이자 4,000원과 일반차입금 실제 이자비용 20,000원 전액을 단순 합산한 금액으로, 일반차입금은 연평균 지출액 미충당분(20,000원)에 자본화이자율을 곱해야 한다는 점을 반영하지 않은 값이다.

오답 포인트

일반차입금 자본화액을 계산할 때 연평균 지출액 전체가 아니라 특정차입금으로 이미 충당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만 자본화이자율을 곱해야 한다는 점을 놓치면 20,000원이나 24,000원처럼 과대계상하게 된다. 반대로 일반차입금 자본화액 자체를 빠뜨리면 4,000원으로 과소계상하게 된다.

NoteBase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먼저 연평균 지출액을 구하고, 그중 특정차입금으로 직접 충당된 금액을 차감하여 일반차입금 대상 지출액을 산정한다. 특정차입금 자본화액은 특정차입금 금액과 이자율, 사용기간을 곱해 별도로 계산하고, 일반차입금 자본화액은 (연평균 지출액 미충당분) × (일반차입금 자본화이자율)로 계산한 뒤 일반차입금 실제 이자비용 한도 내에서 인정한다. 마지막에 두 금액을 합산한다.

암기 포인트

차입원가 자본화 = 특정차입금 자본화액 + 일반차입금 자본화액. 특정차입금 자본화액 = 특정차입금 × 이자율 × 사용월수/12(일시투자수익 차감). 일반차입금 자본화액 = min[(연평균 지출액 – 특정차입금 충당분) × 자본화이자율, 일반차입금 실제 이자비용].

NoteBase

문 3.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의 수익과 비용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정부가 부과하는 방식의 국세는 납세의무자가 세액을 자진신고하는 때에 수익으로 인식한다.

② 신고·납부하는 방식의 국세는 국가가 고지하는 때에 수익으로 인식한다.

③ 원가는 중앙관서의 장 또는 기금관리주체가 프로그램의 목표를 달성하고 성과를 창출하기 위하여 직접적·간접적으로 투입한 경제적 자원의 가치를 말한다.

④ 재화나 용역의 제공 등 국가재정활동 수행을 위하여 자산이 감소하고 그 금액을 합리적으로 측정할 수 있을 때 또는 금액을 합리적으로 측정할 수 없더라도 법령 등에 따라 지출에 대한 의무가 존재한다면 비용으로 인식한다.

정답 3번

쟁점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국세 수익의 인식시점(신고·납부방식 vs 정부부과방식), 원가의 정의, 비용의 인식기준을 정확히 구분할 수 있는지를 묻는 문항이다. 특히 ①②는 두 국세 방식의 수익 인식시점을 서로 뒤바꿔 놓은 함정이다.

용어 풀이

신고·납부방식 국세: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세액을 계산해 신고하고 납부하는 국세(예: 법인세·소득세·부가가치세).
정부부과방식 국세: 국가가 세액을 결정해 납세의무자에게 고지하는 국세(예: 상속세·증여세).
원가: 중앙관서의 장 또는 기금관리주체가 프로그램 목표 달성과 성과 창출을 위하여 직접적·간접적으로 투입한 경제적 자원의 가치.

핵심 구분

수익 인식시점은 '누가 세액을 확정하는가'를 따라간다. 신고·납부방식은 납세의무자가 자진신고하는 때, 정부부과방식은 국가가 고지하는 때에 각각 수익을 인식한다. 비용은 '자산 감소 또는 지출의무 발생 + 금액을 합리적으로 측정할 수 있을 때'가 원칙이며, 측정이 불가능하면 비용으로 인식하지 않는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X: 정부가 부과하는 방식의 국세는 '국가가 고지하는 때'에 수익으로 인식한다. '납세의무자가 자진신고하는 때'는 신고·납부방식의 인식시점이므로 두 방식이 뒤바뀐 서술이다. (자진신고하는 때 → 국가가 고지하는 때)
② X: 신고·납부하는 방식의 국세는 '납세의무자가 세액을 자진신고하는 때'에 수익으로 인식한다. '국가가 고지하는 때'는 정부부과방식의 인식시점이므로 역시 뒤바뀐 서술이다. (국가가 고지하는 때 → 납세의무자가 자진신고하는 때)
③ O: 원가의 정의를 규칙 원문 그대로 옮긴 것으로, 원가는 중앙관서의 장 또는 기금관리주체가 프로그램의 목표를 달성하고 성과를 창출하기 위하여 직접적·간접적으로 투입한 경제적 자원의 가치를 말한다.
④ X: 비용은 자산이 감소하고 '그 금액을 합리적으로 측정할 수 있을 때', 또는 법령 등에 따라 지출에 대한 의무가 발생하고 '그 금액을 합리적으로 측정할 수 있을 때' 인식한다. '금액을 합리적으로 측정할 수 없더라도 … 비용으로 인식한다'는 서술은 측정가능성 요건을 뒤집은 오류이다. (측정할 수 없더라도 의무가 존재하면 비용 인식 → 지출의무가 발생하고 금액을 합리적으로 측정할 수 있을 때 비용 인식)

오답 포인트

①과 ②는 문장 구조가 그럴듯해서 한 방식씩 따로 보면 옳게 느껴지지만, 두 방식의 인식시점이 서로 교차되어 있다는 점이 핵심이다. ④는 '자산 감소'와 '측정 가능'까지는 맞게 읽히다가 '측정할 수 없더라도 비용 인식'이라는 마지막 문구에서 요건이 무너진다. 비용 인식의 대전제인 '합리적 측정 가능성'을 빼거나 부정하는 선지는 오답으로 처리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국세 수익 문항은 '신고·납부=납세자 자진신고 시점 / 정부부과=국가 고지 시점'을 한 쌍으로 외워 두고, 선지에서 방식과 시점이 짝이 맞는지만 대조하면 된다. 비용 인식 선지는 '금액을 합리적으로 측정할 수 있을 때'라는 문구가 온전히 붙어 있는지를 마지막까지 확인한다. 원가·수익·비용의 정의는 규칙 원문 표현을 그대로 쓰므로, 표현이 바뀌지 않은 선지가 정답일 가능성이 높다.

암기 포인트

신고·납부방식 국세 = 자진신고하는 때 수익 인식 / 정부부과방식 국세 = 국가가 고지하는 때 수익 인식.
비용 = 자산 감소 또는 지출의무 발생 + 금액을 합리적으로 측정할 수 있을 때 인식(측정 불가 시 인식하지 않음).
원가 = 프로그램 목표 달성·성과 창출을 위해 직접적·간접적으로 투입한 경제적 자원의 가치.

NoteBase

문 4. (주)한국은 20×1년 초에 무형자산인 라이선스를 ₩500,000(정액법 상각, 내용연수 10년, 잔존가치 ₩0, 재평가모형 적용)에 취득하였다. 20×1년 말 라이선스의 공정가치가 ₩450,000, 20×2년 말 라이선스의 공정가치가 ₩525,000이라면, 20×2년 말 인식할 재평가이익은?

① ₩25,000

② ₩50,000

③ ₩75,000

④ ₩125,000

정답 4번

출제 포인트

재평가모형을 적용하는 무형자산에서 매년 상각을 먼저 반영한 뒤 상각후 장부금액과 기말 공정가치를 비교하여 재평가증감액을 계산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조건 정리

취득원가 500,000원, 정액법 상각, 내용연수 10년, 잔존가치 0원, 재평가모형 적용. 20×1년 말 공정가치 450,000원, 20×2년 말 공정가치 525,000원.

사용할 공식

연간 상각액 = 상각기준액 ÷ 잔여내용연수. 매 보고기간말 상각후 장부금액 = 직전 장부금액 − 당기 상각액. 재평가증가액 = 기말 공정가치 − 상각후 장부금액.

계산 과정

20×1년: 연간 상각액은 500,000 ÷ 10 = 50,000원이다. 20×1년 말 상각후 장부금액은 500,000 − 50,000 = 450,000원이 되는데, 같은 시점 공정가치도 450,000원이므로 재평가차액이 없어 재평가손익은 인식되지 않는다.

20×2년: 잔여내용연수 9년, 잔존가치 0원을 기준으로 연간 상각액을 다시 계산하면 450,000 ÷ 9 = 50,000원이다. 20×2년 말 상각후 장부금액은 450,000 − 50,000 = 400,000원이다. 이 시점 공정가치는 525,000원이므로 재평가증가액은 525,000 − 400,000 = 125,000원이다. 20×1년에 재평가손실(당기비용)로 인식된 금액이 없으므로 당기손익으로 환입할 금액도 없고, 20×2년의 증가액 125,000원 전액이 재평가로 인식할 금액이 된다.

NoteBase

선지 판단

① 25,000원 X — 상각액이나 공정가치 차이를 부분적으로만 반영한 값으로 실제 계산과 맞지 않는다.
② 50,000원 X — 매년 상각액과 같은 값으로, 상각만 고려하고 공정가치 변동을 반영하지 않은 값이다.
③ 75,000원 X — 20×2년 상각을 반영하지 않고 두 시점 공정가치만 단순 비교한 값이다(525,000 − 450,000 = 75,000). 20×2년에도 상각이 먼저 이루어져야 하므로 틀렸다 → 상각후 장부금액 400,000원과 비교해야 한다.
④ 125,000원 O — 20×2년 말 상각후 장부금액 400,000원과 공정가치 525,000원의 차액으로 옳다.

오답 포인트

가장 흔한 오류는 20×2년에도 상각을 먼저 반영해야 한다는 점을 놓치고 두 해의 공정가치만 비교하여 75,000원으로 계산하는 것이다. 재평가모형에서는 매 회계연도마다 상각과 재평가를 함께 처리해야 하며, 직전 재평가액을 새로운 상각기준액으로 삼아 잔여내용연수로 나누어야 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재평가모형이 적용된 자산 문제는 연도별로 (1) 정액법 상각을 먼저 반영해 상각후 장부금액을 구하고, (2) 그 장부금액과 해당 시점 공정가치를 비교해 재평가증감액을 구하는 순서로 접근한다. 특정 연도에 상각후 장부금액과 공정가치가 우연히 같으면 그 해의 재평가손익은 0이 되며, 다음 연도의 상각기준액은 그 재평가된 금액을 사용한다.

암기 포인트

무형자산도 유형자산과 마찬가지로 재평가모형에서는 상각을 먼저 인식한 후 공정가치로 재평가한다.
상각기준액은 매년 직전 장부금액을 기준으로, 잔여내용연수로 나누어 다시 계산한다.

NoteBase

문 5. 다음은 (주)한국의 20×1년 기초 및 기말 재고자산과 관련한 자료이다. (주)한국은 매출원가의 20%를 매출원가에 이익으로 가산하여 제품을 판매하고 있으며, 20×1년 매출액은 ₩60,000이다. (주)한국의 20×1년 직접재료 매입액은 ₩15,000이고, 제조간접원가는 가공원가(conversion cost)의 40%일 때, 20×1년의 기초원가(prime cost)는?

구분	기초	기말
직접재료	₩2,000	₩7,000
재공품	₩8,000	₩5,000
제품	₩7,000	₩10,000

① ₩24,000

② ₩32,800

③ ₩34,000

④ ₩40,000

정답 3번

출제 포인트

매출액과 원가가산율(매출원가 대비 이익률)로부터 매출원가를 역산하고, 제품·재공품·직접재료 각 계정의 기초·기말 재고자료를 이용해 당기제품제조원가와 당기총제조원가를 순차적으로 구한 뒤, 제조간접원가가 가공원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이용해 직접노무원가를 분리하여 기초원가(prime cost = 직접재료원가+직접노무원가)를 계산하는 문제이다.

조건 정리

매출액 ₩60,000, 원가가산율은 매출원가의 20%(매출원가에 20%를 가산해 판매가를 정함). 직접재료 기초 ₩2,000·기말 ₩7,000, 당기매입액 ₩15,000. 재공품 기초 ₩8,000·기말 ₩5,000. 제품 기초 ₩7,000·기말 ₩10,000. 제조간접원가(OH) = 가공원가(전환원가, 직접노무원가+제조간접원가)의 40%.

NoteBase

사용할 공식

판매가 = 매출원가×(1+가산율) → 매출원가 = 매출액÷(1+가산율). 매출원가 = 기초제품+당기제품제조원가-기말제품. 당기제품제조원가 = 기초재공품+당기총제조원가-기말재공품. 당기총제조원가 = 직접재료원가(사용액)+직접노무원가+제조간접원가. 직접재료원가(사용액) = 기초원재료+당기매입-기말원재료. 가공원가 = 직접노무원가+제조간접원가이고 제조간접원가 = 가공원가×0.4이므로 직접노무원가 = 가공원가×0.6. 기초원가(prime cost) = 직접재료원가(사용액)+직접노무원가.

계산 과정

① 매출원가: 판매가가 매출원가의 1.2배이므로 매출원가 $= 60{,}000 \div 1.2 = 50{,}000$원이다.
② 당기제품제조원가: 매출원가 $=$ 기초제품 $+$ 당기제품제조원가 $-$ 기말제품 이므로 $50{,}000 = 7{,}000 + X - 10{,}000$, $X = 53{,}000$원이다.
③ 당기총제조원가: 당기제품제조원가 $=$ 기초재공품 $+$ 당기총제조원가 $-$ 기말재공품 이므로 $53{,}000 = 8{,}000 + Y - 5{,}000$, $Y = 50{,}000$원이다.
④ 직접재료원가(사용액): $2{,}000 + 15{,}000 - 7{,}000 = 10{,}000$원이다.
⑤ 가공원가(직접노무원가+제조간접원가): 당기총제조원가에서 직접재료원가를 차감하면 $50{,}000 - 10{,}000 = 40{,}000$원이 가공원가이다.
⑥ 직접노무원가: 제조간접원가가 가공원가의 40%이므로 직접노무원가는 가공원가의 60%이다. 따라서 직접노무원가 $= 40{,}000 \times 0.6 = 24{,}000$원이다.
⑦ 기초원가(prime cost): 직접재료원가 $+$ 직접노무원가 $= 10{,}000 + 24{,}000 = 34{,}000$원이다.

선지 판단

① 24,000원 — X, 직접노무원가만의 금액이며 직접재료원가를 더하지 않은 값이라 기초원가가 아니다.
② 32,800원 — X, 가공원가 40,000원 전체 또는 다른 배분비율을 잘못 적용했을 때 나오는 값으로 올바른 계산 결과와 다르다.
③ 34,000원 — O, 직접재료원가 사용액 10,000원과 직접노무원가 24,000원을 더한 34,000원이 기초원가이다.
④ 40,000원 — X, 이는 가공원가(직접노무원가+제조간접원가)의 합계액이지 기초원가가 아니다.

오답 포인트

이 문제의 함정은 '제조간접원가는 가공원가의 40%'라는 조건을 '가공원가는 당기총제조원가의 40%'로 잘못 읽는 것이다. 조건은 가공원가 내부에서의 배분비율(제조간접원가:직접노무원가=40:60)을 말하는 것이지, 가공원가가 당기총제조원가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이를 혼동하면 직접재료원가와 가공원가의 합이 당기총제조원가와 맞지 않게 되어 답이 어긋난다. 또한 가공원가 전체(40,000원)를 기초원가로 착각하거나, 직접노무원가만 계산하고 직접재료원가를 더하지 않는 실수도 흔하다.

NoteBase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재고자산 3단계(원재료→재공품→제품) 흐름 문제는 매출원가에서 거꾸로 당기제품제조원가, 당기총제조원가 순으로 하나씩 역산해 올라간다. 원가가산율 조건이 나오면 판매가와 매출원가 중 어느 쪽에 가산율을 곱하는지부터 식으로 확정한다(매출원가에 가산율을 더해 판매가가 되는 구조인지 확인). 가공원가 관련 비율 조건은 반드시 '무엇의 몇 %인지' 문장을 그대로 식으로 옮겨 확인한 뒤 계산에 적용한다.

암기 포인트

매출원가 = 매출액 ÷ (1+가산율). 당기제품제조원가 = 기초제품+당기제품제조원가흐름(기초재공품+당기총제조원가-기말재공품)-기말제품 순으로 3단계 재고흐름을 적용한다. 가공원가 = 직접노무원가+제조간접원가, 기초원가 = 직접재료원가+직접노무원가이며 둘은 직접노무원가만 공유한다는 점을 기억해 둔다.

NoteBase

문 6. 다음은 (주)한국의 20×1년 주당이익 계산과 관련한 자료이다. (주)한국의 배당결의가 이미 이루어졌을 경우 기본주당이익은?

기초유통보통주식수: 800주 (액면금액 ₩1,000)
기초전환우선주: 500주 (액면금액 ₩1,000, 비누적적, 비참가적)
20×1년 7월 1일에 400주의 전환우선주가 400주의 보통주로 전환(기중 전환된 우선주에 대해서는 보통주 배당금 지급)
당기순이익: ₩50,000
연 배당율: 우선주 10%, 보통주 8%

① ₩30

② ₩35

③ ₩40

④ ₩62.5

정답 3번

출제 포인트

기중에 우선주가 보통주로 전환된 경우 기본주당이익 계산에서 (1) 우선주배당금을 얼마나 차감할 것인지와 (2)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에 전환된 주식을 어떻게 반영할 것인지를 묻는 문제이다. 전환된 우선주에 대해 보통주 배당금을 지급하기로 했다는 단서가 우선주배당금 계산의 핵심 조건이 된다.

조건 정리

기초유통보통주식수는 800주이고 액면 1,000원이다. 기초전환우선주는 500주이며 비누적적·비참가적이고 배당율은 연 10%이다. 20×1년 7월 1일에 우선주 400주가 보통주 400주로 전환되었고, 전환된 400주에 대해서는 전환 시점부터 보통주 배당금을 지급하기로 하였으므로 이 400주는 전환 이후 우선주배당 대상에서 제외된다. 배당결의가 이미 이루어졌으므로 우선주배당금은 실제 배당결의액을 기준으로 차감한다.
당기순이익은 50,000원이다.

사용할 공식

기본주당이익 =당기순이익 - 우선주배당금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는 기초주식수에 기중 신규 발행(전환)분을 유통기간에 비례하여 가중한 값을 더해 계산한다.

NoteBase

계산 과정

① 우선주배당금: 전환된 400주는 전환 이후 보통주 배당금을 받으므로 우선주배당 계산에서 제외되고, 연말까지 우선주로 남아 있는 주식은 $500 - 400 = 100$주뿐이다. 따라서 우선주배당금 =100주× 1,000× 10\%=10,000원이다.
②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 기초 보통주 800주는 1년 내내 유통되었으므로 $800 \times \frac{12}{12} = 800$주이다. 7월 1일 전환으로 증가한 보통주 400주는 하반기(6개월) 동안만 유통되었으므로 $400 \times \frac{6}{12} = 200$주이다. 따라서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 $= 800 + 200 = 1{,}000$주이다.
③ 기본주당이익 $= \frac{50{,}000 - 10{,}000}{1{,}000} = \frac{40{,}000}{1{,}000} = 40$원이다.

선지 판단

① ₩30: 우선주배당금을 500주 전체 기준(50,000원)으로 잘못 차감하거나 가중평균주식수를 잘못 산정한 경우에 나오는 값으로 틀린 답이다.
② ₩35: 우선주배당금이나 가중평균주식수 계산 과정에서 일부만 반영한 중간 오류값으로 틀린 답이다.
③ ₩40: 우선주배당금을 남은 우선주 100주 기준 10,000원으로,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를 $800 + 200 = 1{,}000$주로 정확히 계산한 값이므로 옳다.
④ ₩62.5: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를 전환분을 반영하지 않고 800주로만 두고 계산하면 나오는 값($40{,}000/800 = 50$과도 다름)으로, 우선주배당금이나 주식수 산정을 잘못한 경우의 오답이다.

오답 포인트

가장 흔한 실수는 전환된 400주에 대해서도 우선주배당금 10%를 그대로 적용하여 우선주배당금을 50,000원으로 계산하는 것이다. 문제에서 전환된 우선주는 전환 이후 보통주 배당금을 지급한다고 명시했으므로, 우선주배당금은 연말까지 우선주로 남아 있는 100주분만 계산해야 한다. 또한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를 구할 때 7월 1일 전환분 400주를 12개월 전체가 아니라 유통된 6개월만 가중해야 한다는 점도 놓치기 쉽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우선주가 기중에 보통주로 전환되는 문제는 (1) 전환 후 배당 조건(우선주 배당 유지인지 보통주 배당으로 전환인지)을 먼저 확인하고, (2) 우선주배당금은 연말 기준 실제 우선주로 남아 있는 주식수와 배당 조건에 따라 계산하며, (3)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는 전환으로 증가한 보통주식수를 전환일부터 기말까지의 기간 비율로 가중하여 더한다는 순서로 접근한다.

암기 포인트

기본주당이익 =당기순이익-우선주배당금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이며, 전환된 우선주가 보통주 배당을 받기로 한 경우 우선주배당금은 기말까지 남은 우선주식수만으로 계산하고, 신주(전환분)는 유통기간에 비례하여 가중평균한다.

NoteBase

문 7. (주)한국은 선입선출법에 의한 원가기준 소매재고법을 사용하고 있다. 기말재고액(원가)은 ₩1,600이고, 당기매입원가율이 80%인 경우 순인상액과 종업원할인은?

구분	원가	매가
기초재고	₩2,000	₩4,000
당기매입액	₩16,000	₩18,000
매출액		₩20,000
순인상액		㉠
순인하액		₩1,000
종업원할인		㉡

① 순인상액(㉠): ₩1,500, 종업원할인(㉡): ₩1,500

② 순인상액(㉠): ₩1,500, 종업원할인(㉡): ₩2,000

③ 순인상액(㉠): ₩3,000, 종업원할인(㉡): ₩1,500

④ 순인상액(㉠): ₩3,000, 종업원할인(㉡): ₩2,000

정답 4번

출제 포인트

선입선출법에 의한 원가기준 소매재고법(매출가격환원법)에서 순인상액과 종업원할인을 역산하는 문제이다.
선입선출법 소매재고법의 원가율은 기초재고를 제외한 당기매입분만으로 계산한다는 점과,
판매가능재고(매가)에서 매출액·종업원할인을 차감하면 기말재고(매가)가 된다는 관계를 함께 사용해야 한다.

조건 정리

기초재고 원가 ₩2,000, 매가 ₩4,000. 당기매입액 원가 ₩16,000, 매가 ₩18,000. 매출액(매가) ₩20,000. 순인상액(매가) ㄱ. 순인하액(매가) ₩1,000. 종업원할인(매가) ㄴ. 기말재고액(원가) ₩1,600. 당기매입원가율 80%.

NoteBase

사용할 공식

선입선출법 소매재고법의 당기매입원가율은 다음과 같다. 당기매입원가율 = 당기매입원가당기매입매가 + 순인상액 - 순인하액 그리고 기말재고(매가)는 판매가능재고(매가)에서 매출액과 종업원할인을 차감하여 구하며, 기말재고(원가)는 기말재고(매가)에 위 원가율을 곱한 값과 같다. 기말재고(매가) = 기초재고(매가) + 당기매입(매가) + 순인상액 - 순인하액 - 매출액 - 종업원할인

계산 과정

먼저 순인상액(ㄱ)을 구한다. 당기매입원가율은 기초재고를 제외한 당기매입 관련 항목만으로 계산하므로 0.8 = 16,00018,000 + ㄱ - 1,000 우변의 분모를 정리하면 18,000+ㄱ-1,000 = 16,0000.8 = 20,000 이므로 ㄱ = 20,000 - 17,000 = 3,000이다.
다음으로 기말재고(매가)를 구한다. 기말재고(원가) ₩1,600은 같은 당기매입원가율 80%가 적용되므로 기말재고(매가) = 1,6000.8 = 2,000 이다.
마지막으로 종업원할인(ㄴ)을 구한다. 판매가능재고(매가)는 $4{,}000 + 18{,}000 + 3{,}000 - 1{,}000 = 24{,}000$ 이고, 기말재고(매가) 산식에서 24,000 - 20,000 - ㄴ = 2,000 이므로 ㄴ = 24,000-20,000-2,000 = 2,000이다.

선지 판단

① 순인상액 ₩1,500, 종업원할인 ₩1,500 → X. 계산상 순인상액은 ₩3,000이므로 순인상액 값 자체가 틀렸다.
② 순인상액 ₩1,500, 종업원할인 ₩2,000 → X. 종업원할인은 맞지만 순인상액이 ₩1,500이 아니라 ₩3,000이다.
③ 순인상액 ₩3,000, 종업원할인 ₩1,500 → X. 순인상액은 맞지만 종업원할인은 ₩1,500이 아니라 ₩2,000이다.
④ 순인상액 ₩3,000, 종업원할인 ₩2,000 → O. 순인상액 ㄱ=₩3,000, 종업원할인 ㄴ=₩2,000으로 계산 과정과 정확히 일치한다.

오답 포인트

순인상액을 구할 때 기초재고(원가 ₩2,000, 매가 ₩4,000)까지 포함해 원가율 식을 세우면 값이 달라진다. 선입선출법에서는 당기매입원가율 계산 시 기초재고를 제외하고 당기매입·순인상·순인하만 사용해야 한다는 점을 놓치면 순인상액이 ₩1,500으로 잘못 계산되어 ①·②를 고르게 된다. 반대로 순인상액은 맞게 구했더라도 종업원할인을 구하는 단계에서 판매가능재고(매가)에 순인상·순인하를 반영하지 않거나 기말재고(매가)를 매출액과 혼동하면 ③처럼 ₩1,500이라는 오답이 나온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소매재고법 문제에서 평균법·저가기준·선입선출법 중 어느 방법인지 먼저 확인하고, 선입선출법이면 원가율 계산에서 기초재고를 반드시 제외한다는 점을 가장 먼저 적용한다. 이어서 기말재고(매가)=판매가능재고(매가)-매출액-종업원할인이라는 관계식을 세워 미지수를 순서대로(순인상액 먼저, 그 다음 종업원할인) 풀어 나간다.

NoteBase

암기 포인트

선입선출법 소매재고법 원가율 = 당기매입원가 ÷ (당기매입매가+순인상액-순인하액), 기초재고 제외. 기말재고(매가) = 기초재고(매가)+매입(매가)+순인상-순인하-매출액-종업원할인. 기말재고(원가) = 기말재고(매가) × 원가율.

NoteBase

문 8. 충당부채, 우발부채, 우발자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제삼자와 연대하여 의무를 지는 경우에는 이행할 전체 의무 중 제삼자가 이행할 것으로 예상되는 부분을 우발부채로 처리한다.

② 관련 상황의 변화가 적절하게 재무제표에 반영될 수 있도록 우발자산을 지속적으로 평가하며, 상황 변화로 경제적 효익의 유입이 거의 확실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러한 상황변화가 일어난 기간의 재무제표에 그 자산과 관련 이익을 인식한다.

③ 현재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출 금액에 영향을 미치는 미래 사건이 일어날 것이라는 충분하고 객관적인 증거가 있는 경우에는 그 미래 사건을 고려하여 충당부채 금액을 추정한다.

④ 구조조정충당부채로 인식할 수 있는 지출은 구조조정에서 발생하는 직접비용과 간접비용을 포함하되, 구조조정 때문에 반드시 생기는 지출이며, 기업의 계속적인 활동과 관련 있는 지출이어야 한다.

정답 4번

출제 포인트

충당부채·우발부채·우발자산에 관한 회계기준(연대의무의 우발부채 처리, 우발자산의 인식 시점, 충당부채 측정 시 미래사건 반영, 구조조정충당부채의 지출 범위)을 정확히 구분해 옳지 않은 설명을 찾아내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충당부채는 과거사건의 결과로 현재의무가 존재하고 자원 유출 가능성이 높으며 금액을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을 때 인식하는 부채이다. 우발부채는 자원 유출 가능성이 높지 않거나 금액을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없어 부채로 인식하지 않고 주석으로만 공시하는 항목이다. 우발자산은 자산성이 아직 확정되지 않아 원칙적으로 인식하지 않다가, 수익 유입이 거의 확실하게 되면 그 때 비로소 자산으로 인식한다. 구조조정충당부채는 구조조정에서 반드시 발생하는 지출 중 기업의 계속적인 활동과 관련되지 않은 지출만 포함하며, 직접비용은 포함되지만 간접비용은 제외된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O — 제3자와 연대하여 의무를 지는 경우 이행할 전체 의무 중 제3자가 이행할 것으로 예상되는 부분은 기업 자신의 현재의무가 아니므로 우발부채로 처리한다. 옳은 설명이다.
② O — 우발자산은 관련 상황의 변화가 재무제표에 적절히 반영되도록 지속적으로 평가하며, 경제적 효익의 유입이 거의 확실하게 되면 그 상황변화가 발생한 기간에 자산과 관련 이익을 인식한다. 옳은 설명이다.
③ O — 충당부채 금액을 추정할 때, 의무 이행에 필요한 지출액에 영향을 미치는 미래사건이 발생할 것이라는 충분하고 객관적인 증거가 있다면 그 미래사건을 고려하여 금액을 추정한다. 옳은 설명이다.
④ X — 구조조정충당부채로 인식할 수 있는 지출은 구조조정에서 반드시 발생하는 지출로서 기업의 계속적인 활동과 관련이 없는 것이어야 하며, 그 범위는 직접비용만 포함하고 간접비용은 제외한다. "직접비용과 간접비용을 포함하되"라는 서술 → "직접비용만 포함하고 간접비용은 제외한다"가 올바른 내용이므로 옳지 않은 설명이다.

오답 포인트

④를 옳다고 착각하기 쉬운 이유는 구조조정 관련 지출을 '전부'로 뭉뚱그려 생각하기 때문이다.
구조조정충당부채는 범위가 좁게 한정되어 있어 직접비용만 포함되고, 계속적인 활동(예: 직원 재교육·마케팅·신규 시스템 투자 등)과 관련된 지출이나 간접비용은 애초에 충당부채 대상이 아니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구조조정충당부채 지문이 나오면 우선 '직접비용만/간접비용 제외', '계속적인 활동과 무관' 두 가지 요건이 모두 충족되는지 확인한다. 연대의무·우발자산 인식시점 지문은 익숙한 정형 문장이므로 옳은 설명으로 처리하고, 구조조정충당부채 지문에서만 범위를 좁혀 검토한다.

암기 포인트

구조조정충당부채 = 직접비용만 포함(간접비용 제외) + 계속적인 활동과 무관한 지출. 우발자산은 수익유입이 거의 확실해진 시점에 인식(자산화). 연대의무 중 제3자 이행 예상분 = 우발부채.

NoteBase

문 9. (주)대한은 20×1년 7월 1일 (주)한국의 모든 자산과 부채를 취득, 인수하는 사업결합을 하였다. 사업결합과 관련된 자료가 다음과 같을 때, 20×1년 7월 1일 (주)대한이 인식해야 할 영업권은?

○ 사업결합시점에 식별할 수 있는 (주)한국의 순자산 장부금액은 ₩1,000,000이며, 순자산 공정가치는 ₩1,200,000이다.
○ (주)대한은 사업결합의 이전대가로 (주)한국의 주주들에게 (주)대한의 보통주 100주(주당 액면금액 ₩7,000, 주당 공정가치 ₩14,000)를 발행하고 교부하였다.
○ (주)대한은 사업결합과 관련하여 보통주 발행과 직접 관련된 비용 ₩10,000과 기타 수수료 ₩10,000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① ₩180,000
② ₩190,000
③ ₩200,000
④ ₩400,000

정답 3번

출제 포인트

사업결합에서 영업권을 계산하는 문제이다. 영업권은 이전대가에서 취득자가 인식한 식별가능한 순자산의 공정가치를 차감하여 구하며, 이전대가는 주식의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주식발행비와 기타 취득 관련 원가는 이전대가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이 핵심이다.

조건 정리

피취득자 (주)한국의 식별가능한 순자산 공정가치는 ₩1,200,000이다(장부금액 ₩1,000,000은 영업권 계산에 사용하지 않는다). 이전대가는 (주)대한이 발행한 보통주 100주이며, 이전대가의 측정은 액면금액이 아닌 공정가치로 한다(주당 공정가치 ₩14,000). 보통주 발행과 직접 관련된 비용 ₩10,000은 주식발행비로서 주식의 발행금액에서 차감(자본잉여금 차감)하는 항목이고, 기타 수수료 ₩10,000은 사업결합을 위한 자문·중개 등 부대원가로서 발생 시점에 당기비용으로 처리하는 항목이다. 두 금액 모두 이전대가나 영업권 계산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사용할 공식

이전대가 = 교부한 주식 수 × 주당 공정가치. 영업권 = 이전대가 − 식별가능한 순자산의 공정가치.

NoteBase

계산 과정

이전대가: 100주 ×₩14,000 =₩1,400,000. 식별가능한 순자산 공정가치: ₩1,200,000. 영업권: ₩1,400,000 − ₩1,200,000 =₩200,000. 주식발행비 ₩10,000은 주식의 발행금액(자본잉여금)에서 차감되고, 기타 수수료 ₩10,000은 당기비용으로 처리되므로 두 금액 모두 영업권 계산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선지 판단

① ₩180,000 — X: 이전대가에서 두 원가(₩10,000+₩10,000)를 모두 차감한 ₩1,400,000-₩1,200,000-₩20,000 방식으로 잘못 계산한 값이다. 취득 관련 원가는 이전대가에서 차감하지 않으므로 틀렸다.
② ₩190,000 — X: 이전대가에서 원가 중 일부(₩10,000)만 차감하여 계산한 값으로, 어떤 원가도 이전대가에서 차감해서는 안 되므로 틀렸다.
③ ₩200,000 — O: 이전대가 ₩1,400,000에서 식별가능한 순자산 공정가치 ₩1,200,000을 차감한 값과 정확히 일치한다.
④ ₩400,000 — X: 이전대가 ₩1,400,000에서 순자산의 장부금액 ₩1,000,000을 차감한 값으로, 공정가치가 아닌 장부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한 오류이다.

오답 포인트

영업권 계산에서 순자산 장부금액과 공정가치를 혼동하면 ④번을 고르게 된다. 또한 주식발행비와 기타 수수료를 이전대가에서 차감해야 한다고 착각하면 ①·②번을 고르게 되는데, 두 원가는 각각 자본잉여금 차감 항목과 당기비용 항목일 뿐 영업권 계산과는 무관하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사업결합 문제에서는 먼저 이전대가(주식 공정가치 기준)와 식별가능한 순자산의 공정가치(장부금액이 아님) 두 숫자만 골라낸다. 그 다음 취득 관련 원가가 나오면, 주식발행에 직접 관련된 비용인지 그 외 자문·중개 성격의 수수료인지를 구분하여 전자는 자본(주식발행초과금) 차감, 후자는 당기비용으로 분리하고 둘 다 영업권 계산식에서는 제외한다.

암기 포인트

영업권 = 이전대가(주식 등의 공정가치) - 식별가능한 순자산의 공정가치. 주식발행비는 자본에서 차감, 기타 취득 관련 원가(자문·중개수수료 등)는 당기비용 처리 — 둘 다 영업권 계산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NoteBase

문 10. 다음은 20×1년 중앙관서 A부처 기타특별회계의 재무제표 작성을 위한 자료이다. 재무제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프로그램총원가 ₩28,000, 프로그램수익 ₩12,000
◯ 관리운영비: 인건비 ₩5,000, 경비 ₩3,000
◯ 프로그램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수익과 비용: 이자비용 ₩1,000, 자산처분손실 ₩1,000, 자산처분이익 ₩2,000
◯ 국고수입 ₩10,000, 부담금수익 ₩5,000, 채무면제이익 ₩10,000, 국고이전지출 ₩3,000
◯ 기초순자산 ₩20,000(기본순자산 ₩5,000, 적립금 및 잉여금 ₩10,000, 순자산조정 ₩5,000)

① 재정운영표상 재정운영결과는 ₩24,000이다.
② 순자산변동표상 재원의 조달 및 이전은 ₩22,000이다.
③ 순자산변동표상 기말 적립금 및 잉여금은 ₩7,000이다.
④ 순자산변동표상 기말순자산은 ₩18,000이다.

정답 3번

출제 포인트

국가회계기준(정부회계) 재정운영표와 순자산변동표의 작성구조를 이해하고, 주어진 자료로 재정운영결과·재원의 조달 및 이전·기말순자산·기말 적립금 및 잉여금을 각각 산출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재정운영표는 프로그램순원가에서 출발해 재정운영결과까지 내려가고, 순자산변동표는 기초순자산에 재정운영결과(차감)와 재원의 조달 및 이전(가산)을 반영해 기말순자산을 구하는 구조라는 점이 핵심이다.

조건 정리

프로그램총원가 28,000, 프로그램수익 12,000. 관리운영비 = 인건비 5,000 + 경비 3,000 = 8,000. 프로그램과 직접 관련 없는 비배분비용 = 이자비용 1,000 + 자산처분손실 1,000 = 2,000, 비배분수익 = 자산처분이익 2,000. 재원의 조달 및 이전 항목 = 국고수입 10,000 + 부담금수익 5,000 + 채무면제이익 10,000 − 국고이전지출 3,000. 기초순자산 20,000(기본순자산 5,000 + 적립금 및 잉여금 10,000 + 순자산조정 5,000).

사용할 공식

프로그램순원가 = 프로그램총원가 − 프로그램수익. 재정운영순원가 = 프로그램순원가 + 관리운영비. 재정운영결과 = 재정운영순원가 + 비배분비용 − 비배분수익. 재원의 조달 및 이전 = 국고수입 + 부담금수익 + 채무면제이익 − 국고이전지출. 기말순자산 = 기초순자산 − 재정운영결과 + 재원의 조달 및 이전. 기말 적립금 및 잉여금 = 기초 적립금 및 잉여금 − 재정운영결과 + 재원의 조달 및 이전(기본순자산과 순자산조정에 변동이 없다고 전제할 때 두 항목은 모두 적립금 및 잉여금란에 반영된다).

NoteBase

계산 과정

프로그램순원가 = 28,000 − 12,000 = 16,000. 재정운영순원가 = 16,000 + 8,000 = 24,000. 비배분비용 2,000 − 비배분수익 2,000 = 0이므로 재정운영결과 = 24,000 + 0 = 24,000. 재원의 조달 및 이전 = 10,000 + 5,000 + 10,000 − 3,000 = 22,000. 기말순자산 = 20,000 − 24,000 + 22,000 = 18,000. 기말 적립금 및 잉여금 = 10,000(기초) − 24,000(재정운영결과) + 22,000(재원의 조달 및 이전) = 8,000. 기본순자산 5,000과 순자산조정 5,000은 변동 자료가 없으므로 기말에도 그대로이며, 8,000 + 5,000 + 5,000 = 18,000으로 기말순자산과도 정확히 일치한다.

선지 판단

① O — 재정운영순원가 24,000에 비배분비용과 비배분수익이 2,000으로 서로 상쇄되어 재정운영결과는 24,000이 된다.
② O — 국고수입 10,000 + 부담금수익 5,000 + 채무면제이익 10,000 − 국고이전지출 3,000 = 22,000으로 재원의 조달 및 이전과 일치한다.
③ X — 기말 적립금 및 잉여금은 계산상 8,000이다. 틀린 표현 → 올바른 표현: "₩7,000이다" → "₩8,000이다".
④ O — 기초순자산 20,000에서 재정운영결과 24,000을 차감하고 재원의 조달 및 이전 22,000을 더하면 기말순자산은 18,000이 된다.

오답 포인트

재정운영결과를 계산할 때 비배분비용과 비배분수익을 각각 반영하지 않고 하나만 반영하면 24,000이 아닌 다른 값이 나와 ①을 옳지 않다고 잘못 고르기 쉽다. 또한 기말순자산은 맞게 구했더라도 기본순자산·순자산조정에 변동이 없다는 점을 놓치고 재정운영결과와 재원의 조달 및 이전을 기본순자산이나 순자산조정에 나눠 반영하면 기말 적립금 및 잉여금 금액을 잘못 계산하게 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재정운영표 계산 문제는 프로그램순원가 → 관리운영비 가산 → 재정운영순원가 → 비배분비용·비배분수익 가감 → 재정운영결과의 순서를 그대로 따라가며 숫자를 대입한다. 순자산변동표 문제는 순자산을 기본순자산·적립금 및 잉여금·순자산조정 세 항목으로 나눈 뒤, 재정운영결과와 재원의 조달 및 이전이 원칙적으로 적립금 및 잉여금란에 반영된다는 점을 기준으로 각 항목의 기말 잔액을 검산한다.

암기 포인트

재정운영결과 = (프로그램총원가 − 프로그램수익 + 관리운영비) + 비배분비용 − 비배분수익. 기말순자산 = 기초순자산 − 재정운영결과 + 재원의 조달 및 이전. 기본순자산·순자산조정에 별도 변동이 없으면 재정운영결과와 재원의 조달 및 이전은 모두 적립금 및 잉여금에서만 증감한다.

NoteBase

문 11. (주)대한은 퇴직급여제도로 확정급여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20×1년 초 확정급여채무의 장부금액은 ₩15,000이며, 사외적립자산의 공정가치는 ₩12,000이다. 20×1년의 확정급여제도와 관련하여 발생한 재측정요소는 확정급여채무 재측정손실 ₩2,500, 사외적립자산 재측정이익 ₩600이다. 다음의 자료를 이용할 때, 20×1년 말 순확정급여부채는? (단, 자산인식상한은 고려하지 않는다)

◯ 20×1년 순확정급여부채 계산 시 적용되는 할인율은 연 10%이다.
◯ 20×1년 당기근무원가는 ₩4,000이다.
◯ 20×1년 말 퇴직종업원에게 ₩3,000의 현금이 사외적립자산에서 지급되었다.
◯ 20×1년 말 사외적립자산에 ₩5,000을 현금으로 출연하였다.

① ₩4,200
② ₩4,400
③ ₩4,600
④ ₩4,800

정답 1번

출제 포인트

확정급여제도(DB형)에서 확정급여채무(DBO)와 사외적립자산(FVPA)을 각각 별도로 굴려 기말 잔액을 구한 뒤, 그 차액인 순확정급여부채를 계산하는 문제이다.
이자원가·이자수익·근무원가·재측정요소·급여지급·자산출연이 각각 어느 쪽에 어떻게 반영되는지 구분하는 것이 핵심이다.

조건 정리

확정급여채무 기초장부금액 15,000, 사외적립자산 기초공정가치 12,000, 할인율 연 10%, 당기근무원가 4,000, 확정급여채무 재측정손실 2,500, 사외적립자산 재측정이익 600, 기말 퇴직급여 지급 3,000(사외적립자산에서 지급), 기말 사외적립자산 현금출연 5,000.

사용할 공식

확정급여채무 기말 = 기초 + 당기근무원가 + 이자원가(기초×할인율) + 재측정손실 − 퇴직급여 지급액
사외적립자산 기말 = 기초 + 이자수익(기초×할인율) + 재측정이익 + 출연액 − 퇴직급여 지급액
순확정급여부채 = 확정급여채무 기말 − 사외적립자산 기말

NoteBase

계산 과정

이자원가 = 15,000×10% = 1,500
이자수익 = 12,000×10% = 1,200
확정급여채무 기말 = 15,000 + 4,000 + 1,500 + 2,500 − 3,000 = 20,000
사외적립자산 기말 = 12,000 + 1,200 + 600 + 5,000 − 3,000 = 15,800
순확정급여부채 = 20,000 − 15,800 = 4,200

선지 판단

① 4,200 — 옳다. 위 계산 과정과 정확히 일치한다.
② 4,400 — 틀리다. 이자원가와 이자수익을 기초금액이 아닌 다른 금액(예: 기말 추정치)에 적용하거나 재측정요소를 반대로 반영하면 나오는 값으로, 순확정급여부채가 과대 계산된 오답이다.
③ 4,600 — 틀리다. 퇴직급여 지급액 3,000을 확정급여채무 또는 사외적립자산 중 한쪽에서만 차감하거나 이자원가·이자수익 계산에서 실수하면 나올 수 있는 값으로, 실제 계산과 맞지 않는다.
④ 4,800 — 틀리다. 재측정손익(재측정손실 2,500, 재측정이익 600)을 반영하지 않거나 부호를 반대로 처리하면 나오는 값으로, 순확정급여부채가 과대 계산된 오답이다.

오답 포인트

퇴직급여 지급액 3,000은 사외적립자산에서 지급된 것이므로 확정급여채무와 사외적립자산 양쪽에서 모두 차감해야 한다(한쪽만 차감하면 오답이 된다). 또한 이자원가와 이자수익은 각각 확정급여채무와 사외적립자산의 기초금액에 할인율을 곱해 계산하며, 기말 출연액이나 재측정요소에는 이자를 붙이지 않는다. 재측정손실은 확정급여채무를 증가시키는 방향, 재측정이익은 사외적립자산을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반영해야 부호를 헷갈리지 않는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확정급여채무와 사외적립자산을 각각 별도의 표로 정리한다. 확정급여채무는 "기초 + 근무원가 + 이자원가 + 재측정손실 − 지급액"으로, 사외적립자산은 "기초 + 이자수익 + 재측정이익 + 출연액 − 지급액"으로 계산한 뒤 두 값의 차이를 구한다. 지급액은 두 금액 모두에서 동일하게 차감된다는 점을 놓치지 않는다.

암기 포인트

순확정급여부채 = 확정급여채무 − 사외적립자산이며, 이자원가·이자수익은 기초잔액×할인율로 계산한다. 근무원가와 재측정손실은 확정급여채무를 늘리고, 이자수익·재측정이익·출연액은 사외적립자산을 늘리며, 퇴직급여 지급액은 양쪽 모두를 똑같이 줄인다.

NoteBase

문 12. (주)한국은 20×1년 1월 1일에 기계장치를 ₩4,000,000(정액법 상각, 내용연수 5년, 잔존가치 ₩0, 원가모형 적용)에 취득하였다. 각 회계연도 말 기계장치에 대한 회수가능액은 다음과 같다. (주)한국은 20×2년 말에 기계장치에 대해 손상차손이 발생하였고, 20×4년 말에 손상차손환입이 발생하였다고 판단하였다. 20×4년에 계상될 손상차손환입액은?

◯ 20×1년 말 ₩3,200,000
◯ 20×2년 말 ₩1,800,000
◯ 20×3년 말 ₩1,200,000
◯ 20×4년 말 ₩2,000,000

① ₩200,000
② ₩600,000
③ ₩800,000
④ ₩1,400,000

정답 1번

출제 포인트

유형자산 손상차손과 손상차손환입을 원가모형 하에서 연속으로 처리하는 문제이다. 손상이 발생한 이후에는 손상 시점의 장부금액을 새로운 기준으로 잔여내용연수에 걸쳐 재상각하고, 이후 회수가능액이 회복되면 손상이 없었을 경우의 장부금액을 한도로 환입액을 계산해야 한다.

조건 정리

취득원가 ₩4,000,000, 정액법, 내용연수 5년, 잔존가치 ₩0, 원가모형이므로 손상 전 매년 감가상각비는 4,000,000/5 = 800,000이다. 20×2년 말 손상차손 발생, 20×4년 말 손상차손환입 발생이 확정되어 있다.

사용할 공식

매년 말 장부금액과 회수가능액을 비교하여 손상 여부를 판단한다. 손상 발생 시: 손상차손 = 손상 전 장부금액 − 회수가능액, 이후 장부금액은 회수가능액으로 낮추고 잔여내용연수로 재배분하여 상각한다. 환입 발생 시: 환입액 = min(회수가능액, 손상을 인식하지 않았을 경우의 장부금액) − 환입 전 장부금액.

NoteBase

계산 과정

20×1년 말: 장부금액 4,000,000 − 800,000 = 3,200,000, 회수가능액 3,200,000으로 동일하여 손상 없음.
20×2년 말: 손상 전 장부금액 3,200,000 − 800,000 = 2,400,000, 회수가능액 1,800,000이므로 손상차손 2,400,000 − 1,800,000 = 600,000 인식, 장부금액은 1,800,000이 된다. 잔여내용연수는 3년(20×3~20×5)이므로 이후 매년 감가상각비는 1,800,000/3 = 600,000이다.
20×3년 말: 장부금액 1,800,000 − 600,000 = 1,200,000, 회수가능액 1,200,000으로 동일하여 추가 손상·환입 없음.
20×4년 말: 환입 전 장부금액 1,200,000 − 600,000 = 600,000, 회수가능액은 2,000,000이다.
환입 한도는 손상을 인식하지 않았을 경우의 20×4년 말 장부금액, 즉 4,000,000 − 4 × 800,000 = 800,000이다. 회수가능액(2,000,000)이 이 한도(800,000)보다 크므로 환입 후 장부금액은 800,000으로 제한된다.
따라서 손상차손환입액은 800,000 − 600,000 = 200,000이다.

선지 판단

① ₩200,000 — 옳다. 위 계산 과정과 같이 환입 한도(손상이 없었을 경우의 장부금액 800,000)를 적용하여 계산한 정확한 환입액이다.
② ₩600,000 — 틀리다. 이는 환입 전 장부금액(600,000)과 회수가능액(2,000,000)의 차이 중 일부를 잘못 산정하거나 20×3년 재상각 후 감가상각비와 혼동한 값으로, 환입 한도를 고려하지 않은 오답이다.
③ ₩800,000 — 틀리다. 이는 환입 한도 자체(손상이 없었을 경우의 장부금액 800,000)를 환입액으로 착각한 값이다. 환입액은 환입 전 장부금액과 한도의 차액인 200,000이어야 한다.
④ ₩1,400,000 — 틀리다. 이는 회수가능액(2,000,000)과 환입 전 장부금액(600,000)의 차이를 그대로 환입액으로 계산한 값으로, 환입 한도를 무시한 오답이다.

오답 포인트

손상차손환입은 회수가능액이 아무리 커도 손상을 인식하지 않았을 경우의 장부금액(즉 최초 취득원가를 손상 없이 정액법으로 상각했을 때의 장부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는 한도 규정을 놓치면 오답으로 이어진다. 또한 손상 발생 이후에는 감가상각비를 손상 전 금액(800,000)으로 계속 계산하는 실수도 흔하므로, 손상 시점 이후에는 반드시 잔여내용연수를 기준으로 감가상각비를 재산정해야 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손상과 환입이 함께 나오는 문제는 연도별로 표를 그려 장부금액을 추적하는 것이 안전하다. 손상 발생 연도에는 잔여내용연수로 재상각액을 다시 계산하고, 환입 발생 연도에는 반드시 '손상이 없었을 경우의 장부금액'을 별도로 계산하여 회수가능액과 비교한 뒤 더 작은 값을 환입 후 장부금액으로 삼는다.

NoteBase

암기 포인트

손상차손환입 한도 = 손상을 인식하지 않았을 경우의 장부금액(취득원가를 처음부터 정액법으로 계속 상각했다고 가정한 금액). 환입액 = min(회수가능액, 그 한도) − 환입 전 장부금액. 손상 이후 감가상각비는 손상 시점의 장부금액을 잔여내용연수로 나눈 값으로 재계산한다.

NoteBase

문 13. (주)한국은 대형 옥외전광판을 단위당 ₩30,000,000에 판매하고, 옥외전광판에 대한 연간 유지서비스를 단위당 ₩20,000,000에 제공하고 있다. 옥외전광판의 매출원가는 단위당 ₩20,000,000이며, 연간 유지서비스 원가는 단위당 ₩10,000,000이 발생한다. (주)한국은 20×1년 7월 1일에 옥외전광판 1단위와 이에 대한 1년간 유지서비스를 묶어서 ₩40,000,000에 판매하고 설치완료하였다. 이와 관련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기간은 월할 계산한다)

① 20×1년 7월 1일에 인식한 매출액은 ₩24,000,000이다.

② 20×1년의 매출액은 ₩32,000,000이다.

③ 20×1년의 매출총이익은 ₩7,000,000이다.

④ 20×2년의 매출총이익은 ₩6,000,000이다.

정답 4번

출제 포인트

재화(옥외전광판)와 용역(연간 유지서비스)을 하나의 가격으로 묶어 판매하는 경우, 두 수행의무의 개별 판매가격 비율로 거래가격을 배분한 뒤 각 수행의무의 수익인식 시점(재화는 인도 시점 일시인식, 용역은 기간에 걸쳐 인식)에 맞추어 매출액과 매출총이익을 계산하는 문제이다.

조건 정리

옥외전광판 개별 판매가격 ₩30,000,000, 원가 ₩20,000,000(설치 시점 일시 인식). 유지서비스 개별 판매가격(1년) ₩20,000,000, 원가(1년) ₩10,000,000(기간에 걸쳐 인식). 묶음(번들) 판매가격 ₩40,000,000, 20×1년 7월 1일 인도 및 설치완료, 유지서비스 기간은 20×1년 7월 1일부터 20×2년 6월 30일까지 1년이며 월할 계산한다.

사용할 공식

배분비율 = 번들 판매가격개별 판매가격의 합. 각 수행의무 배분액 = 개별 판매가격 × 배분비율. 유지서비스는 기간에 걸쳐 정액법으로 수익과 원가를 인식하므로 연도별 인식액 = 배분된 연간 총액(또는 총원가) × 해당 연도 경과월수12.

NoteBase

계산 과정

개별 판매가격의 합 $= 30{,}000{,}000 + 20{,}000{,}000 = 50{,}000{,}000$원이다. 배분비율 $= \frac{40{,}000{,}000}{50{,}000{,}000} = 0.8$이다.

옥외전광판 배분 매출액 $= 30{,}000{,}000 \times 0.8 = 24{,}000{,}000$원이며, 인도 및 설치가 완료된 20×1년 7월 1일에 전액 일시 인식한다.

유지서비스 배분 매출액(1년 총액) $= 20{,}000{,}000 \times 0.8 = 16{,}000{,}000$원이며, 유지서비스 원가(1년 총액)는 10,000,000원이다(개별원가는 배분 대상이 아니라 실제 발생원가 그대로 인식한다).

20×1년(7월~12월, 6개월) 유지서비스 수익 $= 16{,}000{,}000 \times \frac{6}{12} = 8{,}000{,}000$원, 유지서비스 원가 $= 10{,}000{,}000 \times \frac{6}{12} = 5{,}000{,}000$원이다.

20×1년 총매출액 $= 24{,}000{,}000 + 8{,}000{,}000 = 32{,}000{,}000$원이고, 20×1년 총매출원가 $= 20{,}000{,}000 + 5{,}000{,}000 = 25{,}000{,}000$원이므로 20×1년 매출총이익 $= 32{,}000{,}000 - 25{,}000{,}000 = 7{,}000{,}000$원이다.

20×2년(1월~6월, 6개월)에는 옥외전광판 관련 수익·원가는 이미 20×1년에 전액 인식되었으므로 유지서비스 잔여분만 인식한다. 20×2년 유지서비스 수익 $= 16{,}000{,}000 \times \frac{6}{12} = 8{,}000{,}000$원, 유지서비스 원가 $= 10{,}000{,}000 \times \frac{6}{12} = 5{,}000{,}000$원이므로 20×2년 매출총이익 $= 8{,}000{,}000 - 5{,}000{,}000 = 3{,}000{,}000$원이다.

선지 판단

① O — 20×1년 7월 1일 인식 매출액은 옥외전광판 배분액인 ₩24,000,000이 맞다.

② O — 20×1년 매출액은 옥외전광판 ₩24,000,000과 유지서비스 6개월분 ₩8,000,000을 합한 ₩32,000,000이 맞다.

③ O — 20×1년 매출총이익은 매출액 ₩32,000,000에서 매출원가 ₩25,000,000(전광판 원가 ₩20,000,000+유지서비스 6개월 원가 ₩5,000,000)을 뺀 ₩7,000,000이 맞다.

④ X — 20×2년에는 유지서비스 잔여 6개월분만 인식되므로 매출총이익은 ₩8,000,000-₩5,000,000=₩3,000,000이다. → 틀린 표현 "₩6,000,000이다" → 올바른 표현 "₩3,000,000이다".

오답 포인트

옥외전광판의 매출과 원가를 20×2년에도 다시 배분하거나 반복 인식하면 20×2년 매출총이익을 과대하게 계산하게 된다. 재화 부분은 인도 시점인 20×1년 7월 1일에 전액 한 번만 인식되고, 20×2년에는 유지서비스 잔여 기간분만 남는다는 점을 놓치면 ④를 옳은 설명으로 착각할 수 있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묶음판매 문제는 먼저 개별 판매가격 비율로 거래가격을 배분하고, 그 다음 재화(일시인식)와 용역(기간배분)의 인식 시점을 나누어 연도별로 각각 계산한다. 원가는 배분 대상이 아니라 실제 발생원가를 그대로 해당 연도에 대응시킨다는 점을 확인한다.

NoteBase

암기 포인트

배분비율 = 번들가격 ÷ 개별가격 합. 재화는 인도 시점 일시인식, 용역은 기간 경과에 비례해 인식(월할 계산 시 해당 연도 경과월수/12). 매출총이익 = 매출액 - 매출원가를 연도별로 별도 계산한다.

NoteBase

문 14. 다음은 상품매매 기업인 (주)한국의 재무비율을 산정하기 위한 자료이다. (주)한국은 매출이 전액 외상으로 이루어지며, 재고자산회전율 계산 시 매출원가를 사용할 경우, 매출채권회전율과 재고자산 평균처리기간은? (단, 1년은 360일, 회전율 계산 시 기초와 기말의 평균값을 이용한다)

◯ 매출 ₩4,500,000 ◯ 매출원가 ₩4,000,000
◯ 기초매출채권 ₩150,000 ◯ 기말매출채권 ₩450,000
◯ 기초재고자산 ₩240,000 ◯ 기말재고자산 ₩160,000

① 매출채권회전율(회): 15, 재고자산평균처리기간(일): 18
② 매출채권회전율(회): 15, 재고자산평균처리기간(일): 36
③ 매출채권회전율(회): 30, 재고자산평균처리기간(일): 18
④ 매출채권회전율(회): 30, 재고자산평균처리기간(일): 36

정답 1번

출제 포인트

매출채권회전율과 재고자산평균처리기간을 각각 올바른 분자·분모로 계산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매출채권회전율은 매출(외상매출액)을 기준으로, 재고자산회전율은 매출원가를 기준으로 계산하되, 두 비율 모두 분모는 기초와 기말의 평균값을 쓴다는 점이 핵심이다.

조건 정리

매출 4,500,000, 매출원가 4,000,000; 기초매출채권 150,000, 기말매출채권 450,000; 기초재고자산 240,000, 기말재고자산 160,000. 매출은 전액 외상매출이므로 매출채권회전율 산정 시 매출액 전액을 분자로 사용한다. 재고자산회전율은 매출원가를 분자로 사용하도록 조건에서 지정하였다. 1년은 360일로 가정한다.

사용할 공식

매출채권회전율 =매출평균매출채권, 평균매출채권 =기초매출채권+기말매출채권2. 재고자산회전율 =매출원가평균재고자산, 평균재고자산 =기초재고자산+기말재고자산2. 재고자산평균처리기간 =360재고자산회전율.

계산 과정

평균매출채권 $= \frac{150{,}000 + 450{,}000}{2} = 300{,}000$이므로, 매출채권회전율 $= \frac{4{,}500{,}000}{300{,}000} = 15$회이다.
평균재고자산 $= \frac{240{,}000 + 160{,}000}{2} = 200{,}000$이므로, 재고자산회전율 $= \frac{4{,}000{,}000}{200{,}000} = 20$회이다.
재고자산평균처리기간 $= \frac{360}{20} = 18$일이다.

NoteBase

선지 판단

① 매출채권회전율 15회, 재고자산평균처리기간 18일 → 계산 결과와 정확히 일치하므로 옳다.
② 매출채권회전율 15회, 재고자산평균처리기간 36일 → 매출채권회전율은 맞으나 재고자산평균처리기간이 틀렸다. 36일은 재고자산회전율을 10회로 잘못 계산했을 때(예: 평균재고자산을 잘못 구하거나 매출원가 대신 다른 값을 썼을 때) 나오는 값으로, 실제 재고자산회전율은 20회이므로 처리기간은 18일이 되어야 한다.
③ 매출채권회전율 30회, 재고자산평균처리기간 18일 → 재고자산평균처리기간은 맞으나 매출채권회전율이 틀렸다. 30회는 평균매출채권 대신 기말매출채권만 사용했을 때(4,500,000 ÷ 150,000에 가까운 오산 등)나 평균값을 반영하지 않았을 때 나올 수 있는 값으로, 문제에서 평균값 사용을 명시했으므로 15회가 옳다.
④ 매출채권회전율 30회, 재고자산평균처리기간 36일 → 두 수치 모두 평균값을 반영하지 않고 기말 또는 기초 값만 사용한 오산 결과로, 둘 다 틀렸다.

오답 포인트

이 문제의 함정은 두 회전율의 분모를 서로 바꾸어 쓰거나, 평균값 대신 기초 또는 기말 한쪽 값만 사용하는 데 있다. 매출채권회전율은 매출채권의 기초·기말 평균을, 재고자산회전율(및 이를 이용한 평균처리기간)은 재고자산의 기초·기말 평균을 각각 정확히 대입해야 한다. 또한 재고자산회전율의 분자로 매출원가를 쓰라는 조건을 놓치고 매출액을 쓰면 전혀 다른 값이 나온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재무비율 계산 문제는 먼저 분자·분모 조건(매출 vs 매출원가, 기말 값 vs 평균 값)을 표시해 둔 뒤 계산에 들어간다. 평균값을 이용하라는 조건이 있으면 반드시 (기초+기말)/2로 대체하고, 회전율에서 처리기간(또는 회전기간)으로 전환할 때는 360(또는 365)을 회전율로 나눈다는 절차를 그대로 적용한다.

암기 포인트

매출채권회전율 = 매출 ÷ 평균매출채권, 재고자산회전율 = 매출원가 ÷ 평균재고자산, 재고자산평균처리기간 = 360 ÷ 재고자산회전율. 회전율 계산에서 '평균'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기초·기말을 더해 2로 나눈 값을 쓴다.

NoteBase

문 15. 부채의 정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의무는 항상 다른 당사자(또는 당사자들)에게 이행해야 하며, 다른 당사자(또는 당사자들)는 사람이나 또 다른 기업, 사람들 또는 기업들의 집단, 사회 전반이 될 수 있는데, 의무를 이행할 대상인 당사자(또는 당사자들)의 신원을 반드시 알아야 한다.

② 기업이 실무 관행, 공개한 경영방침, 특정 성명(서)과 상충되는 방식으로 행동할 실제 능력이 없는 경우, 기업의 그러한 실무 관행, 경영방침이나 성명(서)에서 의무가 발생할 수도 있다.

③ 의무에는 기업이 경제적자원을 다른 당사자(또는 당사자들)에게 이전하도록 요구받게 될 잠재력이 있어야 하며, 그러한 잠재력이 존재하기 위해서는, 기업이 경제적자원의 이전을 요구받을 것이 확실하거나 그 가능성이 높아야 한다.

④ 새로운 법률이 제정되는 경우에는 법률제정 그 자체만으로 기업에 현재의무를 부여하기에 충분하다.

정답 2번

출제 포인트

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상 부채의 정의를 이루는 세 가지 요건(의무의 존재, 경제적자원 이전 잠재력, 과거사건의 결과)을 정확히 이해하는지를 묻는다. 특히 의무의 상대방 신원 확인 필요 여부, 잠재력 성립에 필요한 확실성의 정도, 의제의무의 발생 근거, 새로운 법률만으로 현재의무가 성립하는지를 각각 구분해야 한다.

핵심 개념

부채로 인식되려면 다음 세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첫째, 기업에게 의무가 있어야 한다(법적의무 또는 의제의무). 둘째, 그 의무는 경제적자원을 이전해야 하는 잠재력이 있어야 한다. 셋째, 그 의무는 과거사건의 결과로 존재하는 현재의무여야 한다. 의제의무는 기업이 실무 관행, 공개한 경영방침, 특정 성명(서)을 통해 특정 책임을 지겠다는 것을 상대방에게 표명하고, 그 결과 상대방이 기업에게 책임 이행을 기대하게 되는 경우에 성립한다. 이때 기업이 그러한 실무 관행, 경영방침이나 성명(서)과 상충되게 행동할 실제 능력이 없다면 의무가 발생한 것으로 본다. 한편 경제적자원 이전의 잠재력은 존재하기만 하면 충분하고, 그 이전 가능성이 높거나 확실할 필요는 없다(이전의 확실성 여부는 부채의 인식 여부와 측정에 영향을 줄 뿐 부채의 정의 충족 여부와는 무관하다). 또한 새로운 법률이 제정되었다는 사실만으로 현재의무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며, 그 법률의 결과 기업이 경제적자원을 이전해야 하는 상황에 이르렀을 때(예: 그 법률에 따라 특정 방식으로 사업을 운영한 경우 등) 비로소 현재의무가 생긴다. 의무를 이행할 상대방의 신원은 알 필요가 없으며, 심지어 상대방이 사회 전반과 같이 특정되지 않아도 무방하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X. 의무를 이행할 대상인 당사자(또는 당사자들)는 사람이나 다른 기업, 사람들이나 기업들의 집단, 또는 사회 전반이 될 수 있으며, 이 경우 기업이 그 상대방의 신원을 알 필요는 없다. → '신원을 반드시 알아야 한다'는 부분이 잘못되었다.
② O. 기업이 실무 관행, 공개한 경영방침, 특정 성명(서)과 상충되게 행동할 실제 능력이 없는 경우, 그러한 실무 관행 등에서 의제의무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은 개념체계의 설명과 일치한다.
③ X. 경제적자원을 이전하도록 요구받을 잠재력은 그 잠재력이 존재하기만 하면 충분하며, 이전 요구를 받을 것이 확실하거나 그 가능성이 높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 → '확실하거나 가능성이 높아야 한다'는 부분이 잘못되었다(이는 인식 시점의 문제이지 정의 충족의 문제가 아니다).
④ X. 새로운 법률이 제정되는 경우에도 법률제정 그 자체만으로는 현재의무를 부여하기에 충분하지 않다. 그 법률의 결과로 기업이 경제적자원을 이전해야 하는 상황에 이르러야 비로소 현재의무가 발생한다.

오답 포인트

①과 ③은 부채의 정의 요건을 정반대로 뒤집어 놓은 함정이다. 상대방의 신원을 알아야 한다거나, 이전 가능성이 높아야만 잠재력이 인정된다는 서술은 모두 개념체계의 실제 내용과 반대다. ④는 '법률제정'이라는 사건 자체와 그 결과로 발생하는 '경제적자원 이전 요구 상황'을 혼동하게 만드는 함정으로, 법률제정만으로는 현재의무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을 놓치기 쉽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부채 정의 문제는 '의무의 존재', '이전 잠재력의 정도(확실성 불요)', '현재의무 성립 시점(사건 발생 후)'이라는 세 축 중 어느 것을 뒤집었는지를 찾는 방식으로 접근한다. 선지에 '반드시 알아야 한다', '확실해야 한다', '그 자체만으로 충분하다'처럼 단정적이고 강한 표현이 나오면 개념체계가 실제로 요구하지 않는 조건을 덧붙인 오답일 가능성을 먼저 의심한다.

암기 포인트

부채 3요건: 의무(법적+의제) / 경제적자원 이전 잠재력(존재만 하면 충분, 확실성 불요) / 과거사건에 따른 현재의무(법률제정만으론 부족, 실제 자원이전 요구 상황 도달 필요). 의무 상대방 신원은 몰라도 된다.

NoteBase

문 16. 리스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리스제공자는 리스개시일에 금융리스에 따라 보유하는 자산을 재무상태표에 인식하고 그 자산을 리스순투자와 동일한 금액의 수취채권으로 표시한다.

② 포괄손익계산서에서 리스이용자는 리스부채에 대한 이자비용을 사용권자산의 감가상각비와 구분하여 표시한다.

③ 제조자 또는 판매자인 리스제공자는 고객을 끌기 위하여 의도적으로 낮은 이자율을 제시하기도 하며, 이러한 낮은 이자율의 사용은 리스제공자가 거래에서 생기는 전체 이익 중 과도한 부분을 리스개시일에 인식하는 결과를 가져온다.

④ 제조자 또는 판매자인 리스제공자는 금융리스 체결과 관련하여 부담하는 원가를 리스개시일에 자산으로 인식한다.

정답 4번

출제 포인트

리스제공자(금융리스)와 리스이용자의 재무제표 표시 방법을 얼마나 정확히 알고 있는지를 묻는다. 특히 제조자·판매자인 리스제공자가 금융리스 체결과 관련하여 부담하는 원가를 어떻게 처리하는지가 핵심 쟁점이다.

핵심 개념

금융리스에서 리스제공자는 보유 자산을 재무상태표에서 제거하고 리스순투자와 동일한 금액의 수취채권으로 대체하여 인식한다. 리스이용자는 포괄손익계산서에서 사용권자산의 감가상각비와 리스부채의 이자비용을 구분하여 표시한다. 한편 제조자·판매자인 리스제공자가 부담하는 리스개설 관련 원가는 판매이익과 관련된 성격이 강하므로, 다른 일반 리스제공자의 경우(리스개설직접원가를 리스순투자 측정치에 포함)와 달리 리스개시일에 즉시 비용으로 인식한다.

선지별 해설

① 옳다. 리스제공자는 리스개시일에 금융리스에 따라 보유하는 자산을 재무상태표에서 제거하고, 그 자산을 리스순투자와 동일한 금액의 수취채권으로 표시한다.
② 옳다. 리스이용자는 포괄손익계산서에서 사용권자산의 감가상각비와 리스부채에 대한 이자비용을 구분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③ 옳다. 제조자 또는 판매자인 리스제공자는 고객을 유인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낮은 이자율을 제시하는 경우가 있으며, 이러한 낮은 이자율을 사용하면 리스제공자가 거래 전체에서 얻는 이익 중 과도한 부분을 리스개시일에 앞당겨 인식하는 결과가 된다.
④ 옳지 않다 → 제조자 또는 판매자인 리스제공자가 금융리스 체결과 관련하여 부담하는 원가(리스개설직접원가)는 주로 판매이익 창출과 관련된 것이므로 자산으로 인식하지 않고 리스개시일에 비용으로 인식한다.

NoteBase

오답 포인트

①②③은 모두 리스 회계기준의 일반적인 표시·인식 원칙을 그대로 서술한 옳은 문장이어서 오답으로 고르기 쉽지 않다. 함정은 ④인데, 리스이용자나 일반 리스제공자가 부담하는 리스개설직접원가는 리스순투자(또는 사용권자산) 측정에 가산하는 것과 혼동하여 제조자·판매자인 리스제공자의 원가도 자산화한다고 착각하기 쉽다. 그러나 제조자·판매자인 리스제공자의 경우는 예외로, 그 원가를 리스개시일에 즉시 비용으로 인식한다는 점을 구분해야 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리스제공자 관련 선지가 나오면 우선 '일반 리스제공자'인지 '제조자·판매자인 리스제공자'인지부터 구분한다. 제조자·판매자인 리스제공자와 관련된 원가·이익 인식 문제는 판매손익(매출총이익)이 개입되는 특수한 경우이므로 일반 원칙(원가의 자산화)과 반대로 처리된다는 점을 기억하고 선지를 판단한다.

암기 포인트

제조자·판매자인 리스제공자가 금융리스 체결과 관련하여 부담하는 원가는 자산화하지 않고 리스개시일에 비용으로 인식한다(일반 리스제공자의 리스개설직접원가 처리와 반대). 리스제공자는 금융리스 자산을 리스순투자와 동일한 금액의 수취채권으로 대체 표시하고, 리스이용자는 이자비용과 감가상각비를 구분 표시한다.

NoteBase

문 17. (주)한국은 20×1년 4월 1일에 건물을 임대하고, 3년분 임대료 ₩360,000을 현금으로 수취하였다. 세법상 임대료의 귀속시기는 현금기준이며, (주)한국은 임대료에 대해 발생기준을 적용하여 인식한다. 세율이 20×1년 30%, 20×2년 25%, 20×3년 이후는 20%라면, 20×1년 말 재무상태표에 보고될 이연법인세자산(부채)은? (단, 다른 일시적차이는 없고, 임대료는 월할 계산한다)

① 이연법인세자산 ₩60,000

② 이연법인세부채 ₩60,000

③ 이연법인세자산 ₩81,000

④ 이연법인세부채 ₩81,000

정답 1번

출제 포인트

현금기준(세무)과 발생기준(회계)의 인식시점 차이로 생기는 일시적차이를 파악하고, 그 일시적차이가 소멸되는 미래 연도별 세율을 적용해 이연법인세자산을 계산하는 문제이다. 임대료를 먼저 현금으로 전액 받았지만 회계상 수익은 기간 경과에 따라 나누어 인식하므로, 세무상 소득(전액 20×1년 귀속)이 회계상 수익(기간배분)보다 먼저 잡히는 구조를 이해해야 한다.

조건 정리

임대기간은 20×1년 4월 1일부터 3년간(36개월), 총 임대료 ₩360,000을 월할 계산하면 월 $360{,}000 \div 36 = 10{,}000$원이다. 세법상 귀속시기는 현금기준이므로 수취한 20×1년에 360,000 전액이 과세소득에 반영된다. 회계상은 발생기준이므로 20×1년에는 4월~12월까지 9개월분만 수익으로 인식하고, 나머지는 20×2년, 20×3년, 20×4년(1~3월)에 걸쳐 나누어 인식한다. 적용 세율은 20×1년 30%, 20×2년 25%, 20×3년 이후 20%이다.

사용할 공식

이연법인세자산(부채) = 일시적차이 해소 연도별 금액 × 그 연도의 세율. 회계상 수익이 세무상 소득보다 뒤에 인식되는 만큼(회계상 미래수익 인식분) 미래에 세무상 소득을 줄여주므로 차감할(유보 해소) 일시적차이가 되어 이연법인세자산이 발생한다.

NoteBase

계산 과정

20×1년 회계상 수익(9개월): 9 × 10,000 = 90,000원. 20×1년 세무상 익금(현금기준, 전액): 360,000원. 일시적차이(회계상 수익 인식이 유보되는 부분) = 360,000 − 90,000 = 270,000원이며, 이는 20×2년, 20×3년, 20×4년(1~3월)에 회계상 수익으로 인식되면서 소멸(유보 추인)된다.
소멸 시기별 금액: 20×2년(12개월) 12 × 10,000 = 120,000원, 20×3년(12개월) 12 × 10,000 = 120,000원, 20×4년(1~3월, 3개월) 3 × 10,000 = 30,000원. 합계 120,000 + 120,000 + 30,000 = 270,000원으로 위 일시적차이와 일치한다.
각 소멸연도의 세율을 적용하면, 20×2년분 120,000 × 25% = 30,000원, 20×3년분 120,000 × 20% = 24,000원, 20×4년분 30,000 × 20% = 6,000원이다. 이를 합하면 이연법인세자산 = 30,000 + 24,000 + 6,000 = 60,000원이다.

선지 판단

① 이연법인세자산 ₩60,000: O — 계산 과정에서 구한 금액과 정확히 일치한다.
② 이연법인세부채 ₩60,000: X — 금액은 맞지만 방향이 반대이다. 세무상 소득이 회계상 수익보다 먼저(20×1년에 전액) 인식되어 미래의 회계상 수익 인식분이 세무상 소득을 줄여주므로 자산(차감할 일시적차이)이지 부채(가산할 일시적차이)가 아니다.
③ 이연법인세자산 ₩81,000: X — 방향은 맞으나 세율 적용이 잘못되었다. 일시적차이 270,000원 전액에 20×1년 세율 30%를 적용하면 270,000 × 30% = 81,000원이 나오는데, 이는 일시적차이가 소멸되는 미래 연도(20×2~20×4)의 각기 다른 세율을 반영하지 않은 오류이다.
④ 이연법인세부채 ₩81,000: X — ③과 같은 세율 오적용에 더해 자산/부채 방향까지 반대로 표시한 오류이다.

오답 포인트

이 문제에서 가장 흔한 실수는 두 가지이다. 첫째, 자산과 부채 방향을 반대로 판단하는 것이다 — 세무상 소득이 회계상 수익보다 먼저 인식되면(현금을 미리 받아 먼저 과세됨) 미래에는 반대로 회계상 수익만 잡히고 과세소득은 줄어들므로 이연법인세자산이 맞다. 둘째, 이연법인세를 계산할 때 일시적차이 발생연도(20×1년)의 세율이 아니라 그 일시적차이가 실제로 소멸(추인)되는 각 미래 연도의 세율을 적용해야 한다는 점을 놓치는 것이다. 일시적차이 270,000원을 20×1년 세율 30%로 일괄 적용하면 81,000원이 되어 오답 ③이 나온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먼저 회계상 수익 인식액과 세무상 익금 인식액을 연도별로 각각 계산해 그 차이(일시적차이)를 구한다. 그 다음 이 일시적차이가 어느 연도에 소멸되는지를 파악하고, 반드시 소멸되는 그 연도의 세율을 곱해서 합산한다. 마지막으로 세무상 소득이 회계상 수익보다 먼저 인식되었는지(자산) 나중에 인식되었는지(부채)를 확인해 방향을 정한다.

NoteBase

암기 포인트

이연법인세자산·부채는 일시적차이 발생 시점의 세율이 아니라 소멸되는(추인되는) 시점의 세율을 적용한다는 원칙을 기억해 둔다. 현금을 먼저 받아 세무상 소득을 먼저 인식하고 회계상 수익은 나중에 나누어 인식하는 구조는 미래에 회계상 수익이 과세소득을 줄여주므로 이연법인세자산이 발생하는 전형적인 사례로 익혀 둔다.

NoteBase

문 18. 재무제표와 보고기업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보고기업은 단일의 실체이거나 어떤 실체의 일부일 수 있으며, 둘 이상의 실체로 구성될 수도 있으므로, 보고기업이 반드시 법적 실체일 필요는 없다.

② 보고기업이 지배기업 단독인 경우 그 보고기업의 재무제표를 '비연결재무제표'라고 부른다.

③ 보고기업이 지배-종속관계로 모두 연결되어 있지는 않은 둘 이상 실체들로 구성된다면, 그 보고기업의 재무제표를 '결합재무제표'라고 부른다.

④ 연결재무제표는 특정 종속기업의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및 비용에 대한 별도의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정답 4번

출제 포인트

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상 '보고기업' 개념과 재무제표의
종류(연결재무제표·비연결재무제표·결합재무제표)의 정의를 정확히 구분하는지를 묻는다. 보고기업이 반드시 법적 실체가 아니어도 되는 점, 그리고 세 가지 재무제표 유형이 어떤 실체 구성을 전제로 하는지가 핵심이다.

핵심 개념

보고기업은 재무제표를 작성해야 하거나 작성하기로 선택한 실체로, 단일의 실체일 수도 있고 어떤 실체의 일부일 수도 있으며, 둘 이상의 실체로 구성될 수도 있다. 보고기업이 반드시 법적 실체일 필요는 없다.
보고기업이 지배기업 단독으로 구성되면 그 재무제표를 비연결재무제표라고 한다.
보고기업이 지배-종속관계에 있는 둘 이상의 실체 모두로 구성되면 그 재무제표를 연결재무제표라고 하며, 연결재무제표는 지배기업과 모든 종속기업을 하나의 보고실체인 것처럼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및 비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보고기업이 지배-종속관계로 모두 연결되어 있지는 않은 둘 이상의 실체들로 구성되면 그 재무제표를 결합재무제표라고 한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O — 보고기업은 단일 실체, 어떤 실체의 일부, 둘 이상의 실체로 구성될 수 있고 반드시 법적 실체일 필요가 없다는 설명은 개념체계의 보고기업 정의와 일치한다.
② O — 보고기업이 지배기업 단독인 경우 그 재무제표를 비연결재무제표라고 부르는 것이 맞는 용어 사용이다.
③ O — 지배-종속관계로 모두 연결되어 있지는 않은 둘 이상의 실체로 구성된 보고기업의 재무제표는 결합재무제표라고 부르는 것이 맞다.
④ X — 연결재무제표는 '특정 종속기업'만을 식별하여 그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및 비용에 대한 별도의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 연결재무제표는 지배기업과 모든 종속기업을 하나의 보고실체인 것처럼 통합하여 그 전체의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및 비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작성된다. '특정 종속기업에 대한 별도의 정보 제공'이라는 목적 자체가 연결재무제표의 정의와 어긋난다.

오답 포인트

연결재무제표를 '지배기업이 특정 종속기업 하나하나를 별도로 보여주는 자료'로 오해하면 ④를 옳은 설명으로 착각하기 쉽다. 그러나 연결재무제표의 본질은 지배기업과 모든 종속기업의 정보를 하나의 경제적 실체처럼 통합해서 보여주는 것이지, 개별 종속기업을 따로 떼어 보여주는 것이 아니다. 또한 '비연결재무제표'(지배기업 단독)와 '결합재무제표'(지배-종속관계로 모두 묶이지는 않는 실체들)의 용어를 서로 바꿔 쓰지 않도록 주의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보고기업 관련 선지가 나오면 먼저 그 재무제표가 (1) 지배기업 단독인지, (2) 지배-종속관계로 모두 연결된 둘 이상 실체인지, (3) 지배-종속관계로 모두 연결되어 있지는 않은 둘 이상 실체인지부터 구분한다. 이 세 경우가 각각 비연결재무제표, 연결재무제표, 결합재무제표에 대응한다는 틀을 세워두면 어떤 선지가 와도 바로 대입해서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다.

암기 포인트

지배기업 단독=비연결재무제표, 지배-종속관계로 모두 연결된 둘 이상 실체=연결재무제표(전체를 하나의 실체처럼 통합 정보 제공), 지배-종속관계로 모두 연결되어 있지는 않은 둘 이상 실체=결합재무제표. 보고기업은 법적 실체가 아니어도 된다.

NoteBase

문 19. (주)대한은 상품운반용 신제품 드론 1대를 생산하였다. 1대를 생산하는 데 소요되는 원가자료는 다음과 같다. 직접노무시간에 대해 80% 누적평균시간 학습모형이 적용될 때, 드론 3대를 추가로 생산할 경우 발생할 제조원가는? (단, 추가 생산 시 단위당 직접재료원가, 직접노무원가, 변동제조간접원가의 변동은 없으며, 고정제조간접원가는 발생하지 않는다)

○ 직접재료원가	₩80,000
○ 직접노무시간	100시간
○ 직접노무원가	₩1,000/직접노무시간
○ 변동제조간접원가	₩500/직접노무시간

① ₩234,000

② ₩318,000

③ ₩396,000

④ ₩474,000

정답 4번

출제 포인트

누적평균시간 학습모형을 이용해 추가 생산분(3대)의 직접노무시간을 구하고, 이를 바탕으로 직접재료원가·직접노무원가·변동제조간접원가를 합산해 제조원가를 계산하는 문제이다. 핵심은 '1대째 노무시간(100시간)'이 아니라 '누적 생산량 4대에 대한 총노무시간에서 1대째 총노무시간을 차감'하는 방식으로 추가 3대분 시간을 구해야 한다는 점이다.

조건 정리

1대당 직접재료원가는 80,000원이고 추가 생산 시에도 단위당 변동이 없다. 1대 생산 시 직접노무시간은 100시간이며, 학습률은 80%인 누적평균시간 학습모형이 적용된다. 직접노무원가는 시간당 1,000원, 변동제조간접원가는 시간당 500원이며 둘 다 노무시간에 비례한다. 고정제조간접원가는 발생하지 않는다. 구해야 할 것은 드론을 총 4대(기존 1대+추가 3대) 생산했을 때의 누적 노무시간에서, 기존 1대 생산 시 노무시간을 뺀 '추가 3대분 노무시간'이다.

NoteBase

사용할 공식

누적평균시간 학습모형에서는 누적생산량이 2배가 될 때마다 단위당 누적평균시간이 학습률만큼 감소한다. 누적평균시간을 Y_n, 최초 1단위 시간을 a, 학습률을 r이라 하면 생산량이 2배가 될 때마다 $Y_{2n} = Y_n \times r$이 성립한다. 누적 총시간은 $T_n = n \times Y_n$이며, 특정 구간(예: 2번째~4번째)의 소요시간은 $T_4 - T_1$로 구한다.

계산 과정

1대 생산 시: 누적평균시간 $Y_1 = 100$시간, 누적 총시간 $T_1 = 1 \times 100 = 100$시간이다.
누적생산량이 2대(2배)가 되면 누적평균시간은 $Y_2 = 100 \times 0.8 = 80$시간, 누적 총시간 $T_2 = 2 \times 80 = 160$시간이다.
누적생산량이 4대(다시 2배)가 되면 누적평균시간은 $Y_4 = 80 \times 0.8 = 64$시간, 누적 총시간 $T_4 = 4 \times 64 = 256$시간이다.
따라서 추가로 생산하는 3대(2대째~4대째)에 소요되는 직접노무시간은 $T_4 - T_1 = 256 - 100 = 156$시간이다.
추가 3대분 직접재료원가는 $80{,}000 \times 3 = 240{,}000$원이다.
추가 3대분 직접노무원가는 $156 \times 1{,}000 = 156{,}000$원이다.
추가 3대분 변동제조간접원가는 $156 \times 500 = 78{,}000$원이다.
고정제조간접원가는 발생하지 않으므로, 추가 생산 시 제조원가 합계는 $240{,}000 + 156{,}000 + 78{,}000 = 474{,}000$원이다.

선지 판단

① ₩234,000 → X. 추가 3대분 노무시간을 지나치게 적게 산정한 값으로, 누적 총시간 개념을 쓰지 않고 단순히 학습률만 반복 곱한 경우 나올 수 있는 오답이다.
② ₩318,000 → X. 누적생산량 4대 전체의 원가(1대분 포함)를 잘못 구하거나 노무시간 차감을 누락한 경우 나오는 값과 다르며, 조건과 맞지 않는다.
③ ₩396,000 → X. 추가 3대분 노무시간을 156시간이 아닌 다른 값(예: 2대째와 3대째만 고려하거나 4대 누적시간 256시간 전체를 그대로 사용)으로 계산한 경우 나올 수 있는 오답이다.
④ ₩474,000 → O. 누적 총시간 방식으로 $T_4 - T_1 = 156$시간을 구하고, 이를 바탕으로 직접재료원가 240,000원, 직접노무원가 156,000원, 변동제조간접원가 78,000원을 합산한 값과 일치한다.

오답 포인트

가장 흔한 실수는 '누적평균시간'을 '개별 단위시간'으로 착각해 4대째 1대만의 노무시간을 구하거나, 추가 3대분 시간을 $T_4 - T_2$(즉 3대째~4대째만)로 잘못 구하는 것이다. 반드시 '이미 생산한 1대'를 기준으로 삼아 $T_4 - T_1$을 계산해야 추가로 생산하는 3대(2, 3, 4번째 대)의 시간이 정확히 나온다. 또한 직접재료원가는 노무시간과 무관하게 단위당 고정 금액이므로 학습모형을 적용하지 않고 단순히 대수(3대)를 곱해야 한다는 점도 놓치기 쉽다.

NoteBase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누적평균시간 학습모형 문제를 만나면 먼저 '몇 번째 대부터 몇 번째 대까지'의 원가를 구하는지 정확히 파악한다. 그다음 요구되는 마지막 누적생산량과 시작 전 누적생산량 각각에 대해 누적평균시간과 누적 총시간을 구하고, 두 누적 총시간의 차이로 해당 구간의 노무시간을 산출한다. 노무시간에 비례하는 원가(직접노무원가, 변동제조간접원가)는 이 구간 시간에 시간당 단가를 곱하고, 노무시간과 무관한 원가(직접재료원가)는 생산대수에 단위당 금액을 곱해 별도로 더한다.

암기 포인트

누적평균시간 학습모형: 누적생산량이 2배가 될 때마다 누적평균시간이 학습률만큼 감소한다($Y_{2n} = Y_n \times r$). 누적 총시간은 항상 '누적생산량 × 누적평균시간'이며, 특정 구간의 시간은 두 누적 총시간의 차이로 구한다. 노무시간에 비례하지 않는 원가(직접재료원가 등)는 학습모형과 별개로 대수에 비례해 계산한다.

NoteBase

문 20. (주)대한은 20×1년 1월 1일에 (주)한국의 지분 30%를 ₩30,600에 취득하여 유의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게 되었다. 20×1년 1월 1일 (주)한국의 장부상 순자산가액은 ₩100,000이며, 장부금액과 공정가치가 다른 항목은 다음과 같다.

(주)한국의 20×1년 당기순이익이 ₩2,200일 때, (주)대한이 20×1년 인식할 지분법평가이익은?

구분	장부금액	공정가치	비고
상각자산	₩9,000	₩10,000	정액법 상각, 잔여내용연수 5년, 잔존가치 ₩0
재고자산	₩3,000	₩4,000	20×1년 중 모두 (주)A에 판매

① ₩60

② ₩300

③ ₩600

④ ₩660

정답 2번

출제 포인트

관계기업 투자주식에 대한 지분법 적용 시, 투자시점에 식별된 자산의 공정가치와 장부금액 차이(FV차액)를 피투자회사의 당기순이익에 반영하여 지분법이익을 계산하는 문제이다. 상각자산의 FV차액은 잔여내용연수에 걸쳐 추가상각으로, 재고자산의 FV차액은 외부 판매 시점에 매출원가 증가로 각각 피투자회사의 순이익에서 차감한 후 지분율을 곱하는 절차를 정확히 적용할 수 있는지를 확인한다.

NoteBase

조건 정리

취득지분율은 30%이고 취득원가는 ₩30,600이다. 취득일 (주)한국의 장부상 순자산은 ₩100,000이므로 지분율에 해당하는 순자산 지분액은 100,000 × 0.3 = 30,000이다. 상각자산은 장부금액 9,000, 공정가치 10,000으로 FV차액이 1,000 발생하며 정액법으로 잔여내용연수 5년, 잔존가치 0으로 상각한다. 재고자산은 장부금액 3,000, 공정가치 4,000으로 FV차액이 1,000 발생하며 20×1년 중 전량이 외부의 (주)A에 판매되었다. (주)한국의 20×1년 당기순이익은 2,200이다.

사용할 공식

영업권(또는 염가매수차익) 여부와 무관하게 지분법이익은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지분법이익 = 지분율 × ≤ft(피투자회사 당기순이익 - 상각자산 FV차액 상각액 - 재고자산 FV차액 중 당기 판매분) 상각자산의 연간 추가상각액은 FV차액잔여내용연수로 구하고, 재고자산의 FV차액은 당기에 전량 판매되었으므로 전액 당기 비용으로 인식한다.

계산 과정

상각자산 FV차액 1,000을 잔여내용연수 5년, 잔존가치 0의 정액법으로 상각하면 연간 추가상각액은 1,000 ÷ 5 = 200이다. 재고자산 FV차액 1,000은 20×1년 중 전량이 (주)A에 판매되어 실현되었으므로 전액(1,000)을 당기 비용으로 조정한다. 이를 반영한 피투자회사의 조정 후 순이익은 2,200 − 200 − 1,000 = 1,000이다. 따라서 (주)대한이 인식할 지분법이익은 1,000 × 0.3 = 300이다. 한편 취득원가 30,600과 순자산 지분액 30,000의 차이 600은 FV차액 총 2,000 중 지분율 30%에 해당하는 600(상각자산분 300 + 재고자산분 300)과 정확히 일치하므로 영업권은 발생하지 않는다.

선지 판단

① ₩60 → 상각자산 FV차액 상각분(200)에만 지분율을 곱한 금액(200×0.3=60)으로, 재고자산 조정을 누락하고 계산 구조도 잘못 적용한 값이라 틀린 선지이다.
② ₩300 → 피투자회사 당기순이익 2,200에서 상각자산 추가상각 200과 재고자산 판매분 1,000을 차감한 조정후순이익 1,000에 지분율 30%를 곱한 값과 일치하므로 옳은 선지이다.
③ ₩600 → 당기순이익 2,200에서 재고자산 조정 1,000만 차감한 1,200에 지분율을 곱하면 360이 되어 이 값과도 다르며, 오히려 FV차액 총액(2,000)에 지분율을 곱한 값(600)과 우연히 일치하는 오답으로 상각·판매 조정을 당기순이익에 반영하지 않은 값이라 틀린 선지이다.
④ ₩660 → 당기순이익 2,200에 지분율 30%를 곱한 660(FV차액 조정을 전혀 하지 않은 값)이므로 틀린 선지이다.

NoteBase

오답 포인트

이 문항에서 가장 흔한 오류는 상각자산과 재고자산의 FV차액을 지분율을 곱한 금액(300, 300)만큼 곧바로 지분법이익에서 가감하는 것이다. 그러나 올바른 절차는 먼저 피투자회사의 당기순이익 자체를 FV차액 상각·판매 반영분(100% 금액인 200과 1,000)만큼 조정한 뒤, 그 조정후순이익에 지분율을 곱하는 것이다. 결과값은 같아 보일 수 있으나 두 항목을 모두 반영해야 300이 나오며, 하나만 반영하거나 지분율을 잘못된 단계에서 곱하면 60, 600, 660과 같은 오답에 이르게 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지분법이익 계산 문제는 항상 취득원가와 지분율 순자산의 차이(=FV차액 지분 상당액+영업권)를 먼저 확인하고, 상각성 자산은 잔여내용연수로 나누어 매기 상각하며, 재고자산은 당기 중 판매(실현) 여부를 확인하여 판매된 부분만 당기 비용으로 조정한다는 순서로 접근한다. 재고자산이 아직 판매되지 않았다면 그해에는 조정하지 않는다는 점도 함께 기억해 둔다.

암기 포인트

지분법이익 = 지분율 × (피투자회사 순이익 − 상각자산 FV차액의 당기 상각액 − 재고자산 FV차액 중 당기 판매(실현)분)이라는 공식을 그대로 적용한다. FV차액에 지분율을 먼저 곱하는 것이 아니라, 피투자회사의 순이익을 100% 기준으로 먼저 조정한 뒤 마지막에 지분율을 곱한다는 순서를 기억해 둔다.

NoteBase

문 21. (주)한국은 20×1년 초 기계장치를 ₩10,000(정액법 상각, 내용연수 4년, 잔존가치 ₩2,000, 원가모형 적용)에 취득하였다. 기계장치 관련 자료가 다음과 같을 때 옳은 것은?

○ 20×2년 중 최초로 기계장치에 대해 재평가모형으로 변경하였으며, 재평가 시 기존의 감가상각누계액은 전액 제거한 후 공정가치로 평가한다. (상각방법, 내용연수, 잔존가치의 변동은 없다)
○ 20×2년 말 기계장치의 공정가치는 ₩12,000이다.
○ 20×3년 말 기계장치를 현금 ₩8,000을 받고 처분하였다.

① 20×1년 감가상각비는 ₩2,500이다.
② 20×2년 재평가잉여금은 ₩4,000이다.
③ 20×3년 감가상각비는 ₩5,000이다.
④ 20×3년 기계장치 처분이익은 ₩2,000이다.

정답 3번

출제 포인트

원가모형으로 상각하던 유형자산을 재평가모형으로 회계정책을 변경할 때, 변경 시점의 장부금액을 어떻게 계산하고 재평가잉여금을 어떻게 인식하며, 이후 감가상각과 처분손익을 어떻게 계산하는지를 묻는 문제이다. 정액법 감가상각액 계산, 재평가 시 감가상각누계액 제거 방식(비례수정법이 아닌 전액제거법), 재평가 후 잔여내용연수에 따른 재상각, 처분 시 장부금액과 처분대가의 비교라는 네 단계를 순서대로 짚어야 한다.

조건 정리

취득원가 ₩10,000, 취득일 20×1년 초, 정액법 상각, 내용연수 4년, 잔존가치 ₩2,000, 원가모형 적용. 20×2년 중 재평가모형으로 최초 변경하며 기존 감가상각누계액은 전액 제거 후 공정가치로 평가(상각방법·내용연수·잔존가치 불변). 20×2년 말 공정가치 ₩12,000. 20×3년 말 현금 ₩8,000에 처분.

사용할 공식

정액법 감가상각비 = 취득원가-잔존가치내용연수. 재평가 시 장부금액 = 재평가 직전 장부금액, 재평가잉여금 = 공정가치 − 재평가 직전 장부금액(최초 재평가로 상승 시 전액 기타포괄손익). 재평가 이후 감가상각비 = 재평가 장부금액-잔존가치잔여내용연수. 처분손익 = 처분대가 − 처분 시점 장부금액.

NoteBase

계산 과정

20×1년 감가상각비: $\frac{10,000-2,000}{4}=2,000$이다. 20×1년 말 장부금액 $=10,000-2,000=8,000$이다. 20×2년은 원가모형 상각을 그대로 적용해 감가상각비 2,000을 인식하고, 재평가 직전 장부금액 $=8,000-2,000=6,000$이 된다. 재평가는 기존 감가상각누계액을 전액 제거하고 공정가치로 평가하므로, 20×2년 말 공정가치 12,000과 재평가 직전 장부금액 6,000의 차이인 $12,000-6,000=6,000$이 재평가잉여금(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된다.
재평가 후 20×2년 말 장부금액은 12,000, 잔여내용연수는 $4-2=2$년(20×3, 20×4), 잔존가치는 2,000으로 불변이므로 20×3년 감가상각비 $=\frac{12,000-2,000}{2}=5,000$이다.
20×3년 말 장부금액 $=12,000-5,000=7,000$이고, 현금 8,000에 처분하였으므로 처분이익 $=8,000-7,000=1,000$이다.

선지 판단

① X — 20×1년 감가상각비는 2,500이 아니라 2,000이다((10,000-2,000)÷4).
② X — 20×2년 재평가잉여금은 4,000이 아니라 6,000이다(공정가치 12,000 − 재평가 직전 장부금액 6,000).
③ O — 20×3년 감가상각비는 재평가 후 장부금액 12,000을 잔여내용연수 2년, 잔존가치 2,000 기준으로 재상각하여 5,000이 맞다.
④ X — 20×3년 처분이익은 2,000이 아니라, 처분대가 8,000에서 처분 시 장부금액 7,000을 뺀 1,000이다.

오답 포인트

가장 흔한 실수는 재평가 시점을 헷갈려 20×2년 감가상각을 생략하고 취득원가 10,000에서 바로 공정가치를 비교하거나, 반대로 재평가 직전 장부금액을 8,000(20×1년 말 금액)으로 잘못 두는 것이다. 문제에서 재평가는 '20×2년 중' 이루어지지만 공정가치는 '20×2년 말' 기준으로 주어지므로, 20×2년분 감가상각(2,000)까지 반영한 뒤의 장부금액(6,000)과 공정가치를 비교해야 한다. 또한 재평가 후에는 잔존가치와 잔여내용연수만 반영해 상각액을 다시 계산해야 하는데, 기존 정액법 상각액 2,500(오답 ①의 값, 실제로는 사용되지 않음)을 그대로 쓰는 실수도 주의해야 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원가모형에서 재평가모형으로 변경하는 문제는 항상 '변경 직전 장부금액 계산 → 그 장부금액과 공정가치의 차이를 재평가잉여금으로 인식 → 재평가된 장부금액을 새 잔여내용연수·잔존가치로 재상각 → 이후 처분 시 처분 시점 장부금액과 처분대가 비교' 순서로 4단계를 나누어 계산한다. 특히 감가상각누계액을 전액제거법으로 처리한다는 조건이 나오면 재평가 직전 장부금액을 그대로 공정가치와 비교하면 된다.

암기 포인트

최초 재평가로 장부금액이 상승하면 그 차액은 전액 재평가잉여금(기타포괄손익)으로 처리하고 당기손익에 반영하지 않는다. 재평가 이후의 감가상각비는 재평가된 장부금액을 기준으로 잔여내용연수와 잔존가치를 적용해 다시 계산한다. 처분손익은 언제나 '처분대가 − 처분 시점 장부금액'으로 계산한다.

NoteBase

문 22.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에서 위험회피회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위험회피효과란 회피대상위험으로 인한 위험회피대상항목의 공정가치나 현금흐름의 변동이 위험회피수단의 공정가치나 현금흐름의 변동으로 상쇄되는 정도이다.

② 예상거래란 이행해야 하는 구속력을 가지며, 향후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거래이다.

③ 위험회피수단이란 공정가치나 현금흐름의 변동이 지정된 위험회피대상항목의 공정가치나 현금흐름의 변동을 상쇄할 것으로 기대하여 지정한 파생상품 또는 비파생금융자산(또는 비파생금융부채)이다.

④ 확정계약이란 미래의 특정시기에 거래대상의 특정 수량을 특정 가격으로 교환하기로 하는 구속력 있는 약정이다.

정답 2번

출제 포인트

위험회피회계와 관련된 핵심 용어(위험회피효과, 위험회피수단, 예상거래, 확정계약)의 정의를 정확히 구분할 수 있는지를 묻는 문항이다. 특히 예상거래와 확정계약은 둘 다 '미래에 발생할 거래'라는 점에서 헷갈리기 쉽지만, 구속력의 유무라는 결정적 차이가 있다.

핵심 개념

확정계약은 미래의 특정 시기에 거래대상의 특정 수량을 특정 가격으로 교환하기로 하는 구속력 있는 약정이다. 반면 예상거래는 이행이 강제되지 않는, 즉 구속력이 없는 거래로서 향후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거래를 말한다. 구속력이 있는지 여부가 두 개념을 가르는 기준이며, 확정계약=구속력 있음, 예상거래=구속력 없음으로 정리한다. 위험회피효과는 회피대상위험으로 인한 위험회피대상항목의 공정가치나 현금흐름 변동이 위험회피수단의 공정가치나 현금흐름 변동으로 상쇄되는 정도를 뜻하고, 위험회피수단은 그러한 상쇄를 기대하여 지정한 파생상품 또는 비파생금융자산·비파생금융부채를 말한다.

선지별 해설

① 위험회피효과의 정의로 옳은 설명이다. 위험회피대상항목의 공정가치나 현금흐름 변동이 위험회피수단의 공정가치나 현금흐름 변동으로 상쇄되는 정도라는 서술이 정확하다.
② 옳지 않은 설명이다. 예상거래는 이행해야 하는 구속력을 가지지 않는다. 틀린 표현 '이행해야 하는 구속력을 가지며' → 올바른 표현 '이행에 대한 구속력이 없으며'. 구속력을 가지는 것은 확정계약이다.
③ 위험회피수단의 정의로 옳은 설명이다. 공정가치나 현금흐름의 변동이 지정된 위험회피대상항목의 변동을 상쇄할 것으로 기대하여 지정한 파생상품 또는 비파생금융자산(비파생금융부채)이라는 서술이 정확하다.
④ 확정계약의 정의로 옳은 설명이다. 미래의 특정 시기에 거래대상의 특정 수량을 특정 가격으로 교환하기로 하는 구속력 있는 약정이라는 서술이 정확하다.

NoteBase

오답 포인트

예상거래와 확정계약을 혼동하면 이 문제를 틀리게 된다. 확정계약은 '구속력 있는 약정'이고 예상거래는 '구속력 없는 예상'이라는 대비를 명확히 기억해야 한다. ②를 언뜻 보면 '향후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거래'라는 부분만 맞아 보여 그냥 넘어가기 쉬운데, 앞부분의 '이행해야 하는 구속력을 가지며'라는 서술이 예상거래의 정의와 정면으로 모순된다는 점을 놓치지 않아야 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위험회피회계 관련 용어 정의 문제가 나오면 먼저 '구속력이 있는가 없는가'를 기준으로 확정계약과 예상거래를 분리해서 판단한다. 그다음 위험회피대상항목과 위험회피수단이 서로 '상쇄'라는 키워드로 연결되어 있는지를 확인하면 대부분의 선지를 빠르게 가려낼 수 있다.

암기 포인트

확정계약=구속력 있는 약정(반드시 이행), 예상거래=구속력 없는 예상(이행 강제 안 됨)으로 짝지어 외워 둔다. 위험회피효과·위험회피수단은 모두 '상쇄'라는 단어와 함께 등장한다는 점도 함께 기억해 둔다.

NoteBase

문 23. 재무제표 표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상이한 성격이나 기능을 가진 항목은 구분하여 표시하며, 다만 중요하지 않은 항목은 성격이나 기능이 유사한 항목과 통합하여 표시할 수 있다.

② 재무제표의 표시통화를 천 단위나 백만 단위로 표시할 때 중립성이 제고될 수 있으며, 이러한 표시는 금액 단위를 공시하고 중요한 정보가 누락되지 않는 경우에 허용될 수 있다.

③ 전체 재무제표(비교정보를 포함)는 적어도 1년마다 작성하며, 보고기간종료일을 변경하여 재무제표의 보고기간이 1년을 초과하거나 미달하는 경우 재무제표 해당 기간뿐만 아니라 보고기간이 1년을 초과하거나 미달하게 된 이유와 재무제표에 표시된 금액이 완전하게 비교가능하지는 않다는 사실을 추가로 공시한다.

④ 재무제표 항목의 표시나 분류를 변경하는 경우 실무적으로 적용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면 비교금액도 재분류해야 하며, 비교금액을 재분류할 때 재분류의 성격, 재분류된 개별 항목이나 항목군의 금액, 재분류의 이유를 공시한다(전기 기초 포함).

정답 2번

출제 포인트

재무제표 표시(K-IFRS 1001호)의 세부 규정 중 통합표시, 금액 단위 표시, 보고기간 변경 시 공시, 비교금액 재분류 공시를 정확히 알고 있는지를 묻는 문제이다. 특히 큰 금액을 천 단위·백만 단위로 표시하는 이유를 '중립성'과 '이해가능성' 중 무엇으로 연결하는지가 핵심 함정이다.

핵심 개념

재무제표는 성격이나 기능이 상이한 항목은 구분 표시하고, 중요하지 않은 항목은 유사한 항목과 통합 표시할 수 있다.
대규모 금액을 천 단위나 백만 단위로 표시하는 것은 재무제표의 '이해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며, 이는 정보의 신뢰성 요소인 '중립성'과는 다른 개념이다. 중립성은 편의 없이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의미하고, 이해가능성은 이용자가 정보를 쉽게 파악하도록 하는 표시 방식의 문제이다.
전체 재무제표는 적어도 1년마다 작성하는 것이 원칙이며, 부득이하게 보고기간이 1년을 초과하거나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뿐 아니라 변경 이유, 그리고 비교금액이 완전히 비교가능하지 않다는 사실까지 추가로 공시한다.
표시나 분류를 변경하는 경우 실무적으로 적용이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면 비교금액도 재분류해야 하며, 이때 재분류의 성격, 재분류된 항목이나 항목군의 금액, 재분류 이유를 공시한다(전기 기초 재무상태표를 표시하는 경우 그 시점 포함).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O — 상이한 성격이나 기능의 항목은 구분 표시하되, 중요하지 않은 항목은 유사한 항목과 통합하여 표시할 수 있다는 것은 재무제표 표시의 일반 원칙과 일치한다.
② X — 천 단위나 백만 단위로 표시할 때 제고되는 것은 '중립성'이 아니라 '이해가능성'이다. 틀린 표현 '중립성이 제고될 수 있으며' → 올바른 표현 '이해가능성이 제고될 수 있으며'. 뒷부분(금액 단위를 공시하고 중요한 정보가 누락되지 않는 경우 허용)은 맞는 서술이지만, 앞부분의 개념 연결이 잘못되어 전체 문장이 옳지 않다.
③ O — 전체 재무제표는 적어도 1년마다 작성하며, 보고기간종료일 변경으로 보고기간이 1년을 초과하거나 미달하는 경우 그 사실과 이유, 비교가능성의 한계까지 추가로 공시한다는 것은 옳은 서술이다.
④ O — 표시·분류 변경 시 실무적으로 적용 가능하다면 비교금액도 재분류하고, 재분류의 성격·금액·이유를 공시(전기 기초 포함)한다는 것은 옳은 서술이다.

오답 포인트

②를 맞는 문장으로 착각하기 쉬운 이유는 뒷부분(금액 단위 공시, 중요한 정보 누락 방지 조건)이 실제로 맞는 서술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문장 앞부분에서 '중립성'이라는 신뢰성 관련 질적특성을 표시 방식의 효과로 잘못 연결하고 있어 문장 전체가 옳지 않은 것이 된다. '중립성'과 '이해가능성'을 혼동하지 않아야 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재무제표 표시 관련 지문에서 '중립성', '이해가능성', '비교가능성', '신뢰성', '목적적합성' 같은 질적특성 용어가 등장하면, 그 용어가 문맥상 올바른 개념에 붙어 있는지부터 확인한다. 금액 단위(천 원, 백만 원) 표시 효과는 항상 '이해가능성'과 연결된다는 점을 기준으로 삼는다.

암기 포인트

금액 단위 축약 표시(천 단위·백만 단위) → 이해가능성 제고(중립성 아님).
전체 재무제표는 적어도 1년마다 작성, 보고기간이 1년과 다르면 이유+비교불가능 사실 추가 공시.
표시·분류 변경 시 비교금액도 재분류(실무적으로 불가능한 경우 제외), 재분류 성격·금액·이유 공시(전기 기초 포함).

NoteBase

문 24. (주)한국의 20×1년도 고정비는 ₩600,000이고 손익분기점 매출액이 ₩1,500,000이며, 안전한계율이 40%일 경우, 영업이익은?

① ₩0

② ₩200,000

③ ₩400,000

④ ₩1,000,000

정답 3번

출제 포인트

고정비, 손익분기점 매출액, 안전한계율 세 가지 자료만으로 공헌이익률과 실제매출액을 차례로 구한 다음 영업이익까지 이어서 계산하는 문제이다. 안전한계율의 정의를 정확히 알아야 실제매출액을 구할 수 있고, 손익분기점 매출액과 고정비의 관계에서 공헌이익률을 구할 수 있어야 한다.

조건 정리

고정비는 ₩600,000이고, 손익분기점(BEP) 매출액은 ₩1,500,000이며, 안전한계율은 40%이다. 안전한계율은 실제매출액 중 손익분기점을 초과하는 부분(안전한계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뜻한다.

사용할 공식

손익분기점 매출액 =고정비공헌이익률이므로 공헌이익률 =고정비손익분기점 매출액이다. 안전한계율 =실제매출액-손익분기점 매출액실제매출액이고, 영업이익 =(실제매출액-손익분기점 매출액)×공헌이익률이다.

계산 과정

공헌이익률을 먼저 구하면 $\frac{600,000}{1,500,000} = 0.4$, 즉 40%이다.
안전한계율 40%는 실제매출액-1,500,000실제매출액=0.4를 뜻하므로, 손익분기점 매출액이 실제매출액의 60%(=1-0.4)에 해당한다. 따라서 실제매출액 $= \frac{1,500,000}{0.6} = 2,500,000$원이다.
안전한계매출액(=실제매출액-손익분기점 매출액)은 $2,500,000 - 1,500,000 = 1,000,000$원이고, 영업이익은 안전한계매출액에 공헌이익률을 곱한 값과 같으므로 $1,000,000 \times 0.4 = 400,000$원이다.

NoteBase

선지 판단

① ₩0 → X: 실제매출액이 손익분기점 매출액(₩1,500,000)보다 크므로 영업이익은 0보다 크다.
② ₩200,000 → X: 안전한계매출액 ₩1,000,000에 공헌이익률 40%를 잘못 계산하거나 공헌이익률을 절반으로 오인한 경우에 나오는 값이다.
③ ₩400,000 → O: 안전한계매출액 ₩1,000,000에 공헌이익률 40%를 곱한 값과 정확히 일치한다.
④ ₩1,000,000 → X: 공헌이익률을 곱하지 않고 안전한계매출액 자체를 영업이익으로 착각한 경우에 나오는 값이다.

오답 포인트

안전한계율을 손익분기점 매출액 대비 비율로 착각하면 실제매출액을 잘못 구하게 된다. 안전한계율은 항상 실제매출액을 기준으로 한 비율이라는 점을 놓치면 ②나 ④ 같은 오답이 나온다. 또한 영업이익은 안전한계매출액 전체가 아니라 안전한계매출액에 공헌이익률을 곱한 값이라는 점을 빠뜨리면 안 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안전한계율, 손익분기점 매출액, 고정비가 함께 주어지면 먼저 공헌이익률(=고정비÷손익분기점 매출액)을 구하고, 안전한계율의 정의(실제매출액 기준 초과분 비율)를 이용해 실제매출액을 역산한 다음, (실제매출액-손익분기점 매출액)×공헌이익률로 영업이익을 계산하는 순서를 그대로 적용한다.

암기 포인트

공헌이익률 = 고정비 ÷ 손익분기점 매출액. 안전한계율 = (실제매출액-손익분기점 매출액) ÷ 실제매출액. 영업이익 = 안전한계매출액 × 공헌이익률.

NoteBase

문 25. 다음은 (주)한국의 20×1년과 20×2년 수정전시산표의 일부이다. 20×2년 (주)한국이 계산할 매출총이익과 직접법에 따른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증감액은?

계정과목	20×1년 말	20×2년 말
매출채권	₩200,000	₩100,000
재고자산	₩100,000	₩200,000
매입채무	₩200,000	₩300,000
매출	₩500,000	₩700,000
매입	₩600,000	₩500,000

① 매출총이익: ₩300,000,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증감액: ₩400,000 증가

② 매출총이익: ₩300,000,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증감액: ₩400,000 감소

③ 매출총이익: ₩400,000,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증감액: ₩300,000 증가

④ 매출총이익: ₩400,000,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증감액: ₩300,000 감소

정답 1번

출제 포인트

수정전시산표의 재고자산·매출채권·매입채무 잔액 변동을 이용해 매출총이익(발생주의 손익)과 직접법 영업활동현금흐름(현금주의)을 함께 계산하는 문제이다. 매출원가를 먼저 구해 매출총이익을 계산한 다음, 매출채권·매입채무의 증감을 반영해 현금유입액과 현금유출액을 각각 구하고 그 차액으로 영업활동 순현금증감액을 산출하는 순서로 접근한다.

조건 정리

20×1년 말(20×2년 기초) 매출채권 200,000, 재고자산 100,000, 매입채무 200,000이다. 20×2년 말 매출채권 100,000, 재고자산 200,000, 매입채무 300,000이다. 20×2년 매출 700,000, 매입 500,000이다.

NoteBase

사용할 공식

매출원가 = 기초재고자산 + 당기매입 − 기말재고자산이고, 매출총이익 = 매출 − 매출원가이다. 직접법 현금유입액(매출로부터) = 매출 + 매출채권 감소분(또는 − 매출채권 증가분)이고, 현금유출액(매입으로 인한) = 매입 − 매입채무 증가분(또는 + 매입채무 감소분)이다. 영업활동 현금증감액 = 현금유입액 − 현금유출액이다.

계산 과정

매출원가 = 100,000 + 500,000 − 200,000 = 400,000이므로 매출총이익 = 700,000 − 400,000 = 300,000이다.
매출채권이 200,000에서 100,000으로 100,000 감소했으므로 현금유입액은 매출보다 그만큼 더 많다: 700,000 + 100,000 = 800,000.
매입채무가 200,000에서 300,000으로 100,000 증가했으므로 현금유출액은 매입보다 그만큼 더 적다: 500,000 − 100,000 = 400,000.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증감액 = 800,000 − 400,000 = 400,000 증가이다.

선지 판단

① 매출총이익 300,000, 영업활동 현금 400,000 증가 — O. 계산 과정과 정확히 일치한다.
② 매출총이익 300,000, 영업활동 현금 400,000 감소 — X. 매출총이익 금액은 맞지만 증감 방향이 반대이다. 매출채권 감소와 매입채무 증가가 모두 현금흐름을 늘리는 방향이므로 감소가 아니라 증가이다.
③ 매출총이익 400,000, 영업활동 현금 300,000 증가 — X. 매출원가 계산에서 기초·기말 재고자산을 반대로 적용하면 나오는 오답 금액이다.
④ 매출총이익 400,000, 영업활동 현금 300,000 감소 — X. ③과 같은 재고자산 반영 오류에 현금증감 방향까지 반대로 잘못 판단한 경우 나오는 금액이다.

오답 포인트

매출원가 공식에서 기초재고와 기말재고를 바꿔 적용하면 매출원가가 200,000으로 계산되어 매출총이익이 400,000으로 잘못 나온다. 또한 매출채권·매입채무의 증감 방향과 현금흐름 증감 방향을 헷갈리면 부호가 반대로 뒤집힌다: 매출채권 감소는 현금유입을 늘리고, 매입채무 증가는 현금유출을 줄인다는 점을 각각 반대로 적용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발생주의 항목(매출·매입)을 현금주의로 바꿀 때는 관련 자산·부채 계정의 기초와 기말 잔액 변동 방향을 먼저 표시해 둔다. 자산(매출채권, 재고자산) 증가는 현금흐름에 (-), 감소는 (+)로 작용하고, 부채(매입채무) 증가는 현금흐름에 (+), 감소는 (-)로 작용한다는 부호 규칙을 매출원가 계산과 현금흐름 계산에 각각 순서대로 적용한다.

NoteBase

암기 포인트

매출원가 = 기초재고 + 매입 − 기말재고. 현금유입액 = 매출 − 매출채권 증가분. 현금유출액 = 매입 − 매입채무 증가분. 자산 증가는 현금 감소 방향, 부채 증가는 현금 증가 방향이라는 원칙을 함께 기억해 둔다.

NoteBase